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日帝監視對象 인물카드의 관리와 활용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한 정 원

국문초록

日帝監視對象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 전체에 걸쳐 경찰이 생산한 기록물로 인물의 신상 및 인치·수형정보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식에 사진을 부착한 카드 형태의 기록물이다. 해방 후 치안국과 치안본부를 거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관리하고 있다.

인물카드는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모을지 결정하고, 수집하고, 구조화시킨 결과물이다. 따라서 기록의 형태,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와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한 주체인 기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기록이 누적되는 과정과 기관의 변천을 연계 분석하여 기록물의 생산·관리 배경을 밝히고 인물카드가 독립운동가의 활동 증거 자료 이상의 활용 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는 기록물임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인물카드를 분석하여 생산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던 정보를 파악하고 기록이 가담한 활동과 지향성을 유추했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관련 규정과 법령을 검토했다. 경찰기록관리에 대해 알려진 규정이 없어 사진과 함께 경찰의 필수 업무 자료로 취급되었던 지문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참조했다. 기록물에 해방 후 생산된 인물카드가 포함되어 있고 카드로 인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단절되지 않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해방 직후 경찰 직제 및 1964년 공포된 '피의자사진관리규정'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한 기관의 변천과 활동, 경찰 정책 변동추이를 추적했다. 경찰관계자를 주 독자층으로 발간되었던 간행물 『경무휘보(警務彙報)』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따라서 기록 축적 과정의 표면과 맥락, 기록의 변동과 기관의 활동이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초기 인물카드는 사법부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에서만 지문을 수집했던 시기와 초기 양식 사용 기간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양식의 갱신은 경찰지문수집 규정 생성과 지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설치상황과 연동된다. 방범 목적의 사찰과 인물

관리 강화 방향으로 항목이 보강된 것도 카드의 생산 및 관리 주체가 완전히 경찰로 넘어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인물카드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었다. 사법경찰과 고등경찰까지 넓은 범위의 업무를 담당했는데 경찰 자료 관리와 연구, 통계 등을 담당했고 감식설비를 보강하며 확장을 거듭했다. 자료 관리 업무는 형사과가 전 조선 수사 기관 연락 중추 역할을 할 명분도 확보해주었다.

교통의 발달에 따른 활발한 인구 이동은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경찰에게도 호 단위에서 개인으로 관리방침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1930년대에도 이어진 사상범 및 형사사건 증가 추세와 적체상황 해소를 위해 재범방지 제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 형사과는 감식설비를 더욱 보강했고 무수한 카드 형태의 기록물을 제작했으며, 효율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형사과는 사진과 지문을 보강하는 정보로 수법과 외형특징을 체계화된 지식으로 만들어 이용하려 했다. 인물카드에는 식별을 강화하면서 손쉬운 관리를 위해 개인을 유형화해야 하는 경찰의 방법론이 드러나 있다.

해방 후 첨예한 사상대결에 사찰은 여전히 경찰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찰직제에도 반영되었다. 경찰은 카드로 인물을 관리하는 방식을 이어갔고 1964년 피의자 사진과 사진표 관리에 대한 규정도 제정하였다. 규정상 기록물의 기능은 일제 생산 카드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 기록물에 포함된 해방 후 생산된 인물카드는 물론 규정 이후 생산되었을 인물카드는 일제 생산 인물카드와 같은 계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물카드는 현재 건 별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지만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하면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인물의 서사를 보강할 수 있는 자료와 연결해 제공한다면 당시 관리 도구에 불과했던 사진의 활용 가능성도 다른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인물카드, 사진기록, 경찰기록,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학 번 : 2018-25549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10

제 2 장 보존관리 배경과 관리기관의 업무변동 ·· 13
제 1 절 인물카드 관리배경과 형사과의 업무 ····· 13
제 2 절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업무변동과
사상범 관리 ····· 25
제 3 절 해방 후 감시대상 인물카드의 활용 ····· 40

제 3 장 인물카드 양식의 변화 ····· 56
제 1 절 수형 정보 중심의 초기 양식 ····· 59
제 2 절 수사 자료 중심의 과도기 양식 ····· 69
제 3 절 연계성이 강화된 최종양식 ····· 82

제 4 장 결론 ····· 93

참고문헌 ····· 97
Abstract ····· 100

표 목 차

[표 2-1] 『朝鮮新聞』에 실린 범죄수법카드 관련 기사 ····· 28
[표 2-2] 치안유지법 검거사건 처분 통계(1925~1933) ····· 33
[표 2-3] 치안유지법 검거 조선인에 대한 검사 수사 사건 통계 ····· 34
[표 2-4] 해방 직후 감식 및 과학 수사 담당 기관 변천 ···· 40
[표 2-5] '피의자사진관리규정' 구성 및 내용 ····· 43
[표 3-1] 인물카드 양식별 사용기간과 수량 ····· 56
[표 3-2] A양식 카드 전면과 후면 ····· 59
[표 3-3] B양식 카드 전면 ····· 69
[표 3-4] B양식 카드 후면 ····· 70
[표 3-5] C양식 카드 전면 ····· 71
[표 3-6] C양식 카드 후면 ····· 72
[표 3-7] D양식 카드 전면 ····· 82
[표 3-8] D양식 카드 후면 ····· 83
[표 3-9] 인물카드 전면 A양식부터 D양식까지 항목 변화 89
[표 3-10] 인물카드 후면 A양식부터 D양식까지 항목 변화 90

그 림 목 차

[그림 2-1] 지문원지 전면과 후면 ····· 15
[그림 2-2] 1930년 朝鮮警察機關一覽圖 ····· 17
[그림 2-3] 해방 후 생산된 인물카드 ····· 42
[그림 2-4] 변귀현의 인물카드 ····· 47
[그림 2-5] 안동원의 인물카드 ····· 48
[그림 2-6] 인물카드 이용자 열람 화면 ····· 51
[그림 2-7] 박용기의 인물카드 ····· 52
[그림 2-8] 김순만의 인물카드 3종 ····· 54
[그림 3-1] 이일영의 인물카드 (A양식) ····· 60
[그림 3-2] 이계엽의 인물카드 전면 (D양식) ····· 64
[그림 3-3] 김선명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 65
[그림 3-4] 김후식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 65
[그림 3-5] 김선두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 66
[그림 3-6] 베르티옹의 인체측정카드 ····· 67
[그림 3-7] 윤좌진과 최태식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 67
[그림 3-8] 홍종현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 76
[그림 3-9] 권오설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 76
[그림 3-10] 김두수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 77
[그림 3-11] 김지섭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 78
[그림 3-12] 조용주의 인물카드 2종 전면 (B양식) ····· 78
[그림 3-13] 강원호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 79
[그림 3-14] 이낙영의 인물카드 전면 (C양식) ····· 80
[그림 3-15] 주현갑의 인물카드 3종 전면 (C양식) ····· 81
[그림 3-16] 오산세의 인물카드 (D양식) ····· 84

[그림 3-17] 『경무휘보』에 실린 수배인상서 ····· 87
[그림 3-18] 베르티옹의 Portrait Parle 중 코의 모양 일람표 ····· 87
[그림 3-19] 서대문형무소 인상 및 특징표 ····· 88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日帝監視對象 인물카드(이하 인물카드)는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일제가 생산한 기록으로 인물의 신상 및 인치(引致)·수형(受刑) 정보 등을 기입할 수 있는 양식에 사진을 부착한 카드 형태의 기록물이다. 현재 총 6,264장이 남아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인물카드는 해방 후 치안국을 거쳐 치안본부가 보관·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치안본부는 기록물을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고,[1] 최종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기록물을 인수했다. 인물카드는 아홉 권의 영인본으로 출간되어 연구자료로 이용되었다.[2] 2018년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의 활동 사실을 입증하는 신빙성 높은 증거이자 희귀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재로 지정되었다.[3]

본 고는 기록과 기관의 변천을 연계 분석하여 기록물의 생산·관리 배경을 밝히고 독립운동가의 활동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이상의 활용 가능성을 재고할 수 있는 다층적 맥락을 가진 기록물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의 범주는 생산기관 외 기록이 거쳐간 곳, 보유 기관까지 포괄했다. 기록은 보유 기관에 따라 별도의 의미를 부여받고 그에 따른 관리를 받기 때문이다. 기록의 연혁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공한다.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고 재현할지에 대해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

---

1) 『동아일보』 1982년 9월 11일 「政府 抗日運動자료 발굴작업」.

2) 國史編纂委員會 編纂, 1991~1993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 총 9권으로 간행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朴永錫의 간행사에 따르면 위원장이 치안부 당국과 교섭한 결과 총 6,264장의 카드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료의 편집은 한 페이지에 카드의 전면과 후면을 배치하고, 인물의 성과 이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3) 문화재청,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등 5건 문화재 등록, 「지청천 일기」 등 3건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 2018.10.01.
https://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1002&sectionId=b_sec_1&mn=NS_01_02

할 수 있다.[4)]

기존 인물카드에 대한 연구는 생산기관을 밝히는 연구와 인물카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데이터로 만들어 이용한 연구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인물카드는 생산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우선 생산기관을 파악하고 생산목적을 밝히는데 주목했다. 이애숙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과 카드에 담긴 정보를 분석해 생산기관이 경찰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논증했다.[5)] 인물카드에는 일제강점기 인물의 상당한 신상정보가 파편적으로 누적되어 있기에 특정 범위에 속하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6)] 한편 조영준의 연구는 인물카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적합성과 한계를 밝히고 데이터 분석 이전 적합한 사료 비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7)]

선행연구는 기록물 생산기관과 생산목적까지 이처럼 일정 부분 밝혀내긴 했으나 대체로 일제강점기 인물정보를 데이터화시켜 분석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인물카드에 사진 외 전반적으로 정보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정보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다른 기록과 교차 검토하는 등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물카드는 기관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모을지 결정하고, 수집하고, 구조화시킨 결과물이다. 데이터의 비판적 활용을 위해서도 기록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좀 더 세부

---

4) Jennifer Douglas, 2017 *Origins and Beyond: The Ongoing Evolution of Archival Ideas about Provenance*,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Second Edition), Libraries Unlimited pp.39~46.

5)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가 인물카드를 관리한 기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박경목은 서대문형무소를 인물카드 관리기관으로 추정했다.
이애숙, 2014「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박경목, 2018「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한국독립운동사연구』64

6) 박경목, 2014「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현황과 특징」,『한국 근현대사 연구』68; 박경목, 2018「3·1운동 관련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인문과학연구』26; 황인혁, 2018「질병환경과 영양접근성이 조선인의 신장에 미친 영향 분석」,『경제사학』67; 이동언, 2018「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 - 천안지역 인물을 중심으로」,『유관순 연구』23.

7) 조영준, 2016「'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활용한 身長연구의 재검토 - 자료의 비판적 이해와 가공 문제를 중심으로」,『경제사학』60.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관에 대한 이해가 기록의 특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기록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되기에 두 요소는 필연적으로 연동되어있다. 양자의 관계 맺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기록의 생산 배경, 조직 질서를 반영하는 기록의 위계와 위치, 기록이 이용된 활동 등의 정보는 기관과 기록 간 연계 분석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다. 이런 맥락 정보는 기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돕고 의미 부여를 가능하게 한다.

한 장당 한 사람의 정보를 담은 여러 장의 인물카드는 기관이 수립한 특정 질서에 따라 관리되었을 것이다. 특정 인물의 카드 단 건만 개별적으로 검토한다면 기록물의 특성 일부만 포착할 수밖에 없다. 기록물이 누적된 기간 및 전체 조직구조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적, 내용적 측면에서 인물카드 전체를 검토했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뽑아낼 수 있다. 카드 일부는 소실되었고 생산자가 수립한 정리 질서가 파괴되어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전체에 걸쳐 생산되고 축적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비주기적으로 몇 차례 양식이 갱신되었다. 사진을 이용하기 위한 형태로 고안되었다. 내용적으로는 사상운동이나 독립운동에 간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카드 수량이 상당하나 일반 범죄자의 카드도 포함되어 있다. 해방 이후 생산된 두 장의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용적인 부분은 시각정보가 포함된 독립운동가의 활동 증거기록이라는 현재 인정된 가치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돌출되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 기관의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인물카드의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기록과 기관을 연계 분석할 것이다. 사진의 사용, 일제강점기 전체에 걸친 축적 기간, 경찰 자료라는 측면이다.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기록 중에서도 새로운 기록 도구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문자정보와 시각정보가 함께 쓰인 당시로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록물이었다. 일제는 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진기록을 생산하고 사용했다. 조선사편수회가 조선 전역에서 고서와 고도서를 촬영

하여 생산한 유리건판,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술조사 일환인 고적조사사업의 결과물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와 조사과정에서 생산한 유리건판 외에도 식민경영의 성과를 소개하기 위해 발행한 사진첩 등 일제가 생산한 사진기록은 상당히 많은 양이 남아있다. 일제는 조선에서 생산한 사진기록을 식민지 통치에 필요한 지식의 축적 및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직조하는데 사용하였다.[8)]

특히 사진 도입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사이 생산된 인물사진은 생산목적에 따라 의례(儀禮), 학술, 제도 세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 고종의 초상은 사진 도입기에 생산된 대표적인 인물사진이다. 제의적 기능을 가지고 있던 군주의 초상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외부의 요구에 의해 변화되던 시점은 사진술 도입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초기 군주의 초상사진은 국가 상징물로 각국과의 외교적 접촉과정에서 관례에 따라 요구되었기에 생산되었다.[9)]

학술 목적으로 생산된 인물사진은 '체질인류학' 조사 기록사진이 있다. 1911년에서 1916년 사이 인류학 학자 도리이 류조(鳥居龍藏)가 총독부 촉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한반도 각 지역 주민을 촬영한 '체격 측정' 사진이 대표적이다. 학술조사에 사진을 기록 도구로 적극 활용했다는 점 때문에 도리이 류조는 아시아 인류학계의 선구자로 재조명받을 수 있었다.[10)]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전통은 해부학적으로 인류를 분류하고

---

8) 일본이 관 차원에서 조선에서 생산한 사진을 분석한 대표적인 국내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경민, 2010『제국의 렌즈』산책자; 권행가, 2015『이미지와 권력』돌베개; 선일, 2004「일제시대 학술조사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민선유, 2018「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사료 연구」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논문.

9) 퍼시벌 로웰(Percival Lowell)이 촬영한 초기 고종 사진은 朝美通商條約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다. 로웰은 1883년 미국을 방문했던 報聘使를 수행하던 참사관이었으며 그 임무수행에 대한 보답으로 조선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고종의 사진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수교와 외교적 관계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고종은 외교적 활동의 일환으로 카메라 앞에 자주 섰다.

권행가, 2005「高宗 皇帝의 肖像 -近代 시각매체의 流入과 御眞의 변용 과정-」, 홍익대학교 미술사학사 박사논문, 24~43쪽.

10) 도리이 류조가 생산한 사진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인종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인종의 전형을 분류하는 형질은 변형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집단 내에서 통일성 있게 나타나는 요소여야 했는데, 두개골의 모양이 주로 채택되었다.[11] 따라서 체질인류학 조사 사진은 상체 중심의 인물사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위의 두 가지 예는 사진을 특정 계층에서 활용하던 정황을 보여준다. 사진의 소유와 보관 가치가 인식되기 시작하고 복사와 인쇄 기술의 발달로 접근성이 커짐에 따라 인물사진은 전반적으로 더욱 세속화・실용화되었다. 인물사진이 신상에 대한 증명과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사회적 도구로 활용되는 시작점은 사진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 신비로운 영역에 있었기에 가지고 있던 특권이 상실되는 시점과 중첩된다.

1901년 『황성신문』의 기사는 사진을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하기 시작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초기 기록이다. 기사는 만국신문기자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으로 신원이 증명되면 단체에 가입됨은 물론 비로소 신문기자로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12] 각종 지원서 및 여권 등에 사진을 부착하라는 법령과 고시도 등장하기 시작한다.[13] 제도와 결합한 사진의 활용은

오춘영, 2017「일제강점기 도리이류조(鳥居龍藏)의 충북지역 인류학 조사 사진 분석」, 『백산학보』 108, 124~125쪽.

11) 두개골의 특성은 지능, 기질, 문화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체질인류학 연구는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日鮮同祖論으로 대표되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하는데 학술적 근거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조사로 인구의 질적・양적 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했다.
박순영, 2006「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시선」, 『비교문화연구』 12(2), 60~61쪽.

12) 『황성신문』, 1901년 4월 18일「萬國新聞記者會議」.

13) 국가법령정보센터, 1911.5.1. '외국여권규칙' (조선총독부령 제30호 1911.3.30., 일부개정).
사진으로 신원을 증빙해야 함을 밝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② 청국 및 러시아령의 사할린섬・연해주와 흑룡주에 가고자 하는 조선인은 전항의 원서에 최근에 촬영 촬영한 본인의 사진(반신 2매)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여권을 몰수하고 100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① 제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사칭하여 여권 교부의 원서에 타인의 사진을 첨부하거나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기타 사기행위로 여

개인을 식별하여 어떤 자격을 부여하거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해주고, 관리 대상으로 확정시키는 등 사진이 근대 사회 구조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지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도구로서 사진의 역할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이 학술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생산한 사진이나 일반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생산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제도와 결합한 사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물카드는 사진이 제도와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활용된 예로 제시될 수 있다. 생산부터 시각정보와 문자정보가 결합한 타 사진기록과 구분되는 형태적 특성은 사진이라는 새로운 실증적 기록 도구의 탄생, 그 특성과 가능성을 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을 드러낸다. 따라서 제도와 결합한 사진은 제도 운영 주체도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14)]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 거의 전 기간에 걸쳐 누적된 기록이다. 물론 누락된 건들이 있어 전체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고 생산 및 관리 기관이 구축한 정리 질서가 유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약 삼 십 여년 누적되었기 때문에 기록에는 피의자에게 주로 적용되었던 법이나 제도의 변천이 일부 담겨있고 이를 근거로 대략적인 사회 변동 상황도 유추할 수 있다. 기록 내용에서 드러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크게 1920년대 중반

권의 교부를 받은 자 및 이를 방조한 자

④ 여권에 붙인 사진을 바꾸어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14) John Tagg의 사진에 대한 정의는 제도와 결합한 사진의 활용 예와 부합한다. 그는 사진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진실의 일반 정치(general politics of truth)'라고 칭한 것의 일부로서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내부에서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진을 "특별히 정해진 정교한 제작 방식에 의해 생산되고 특정 사회적 관계 내에서 배포, 순환, 소비되는 물질적 품목"이자 "생산 관계 안에서 의미와 이해가 생성되고 더 넓은 이념적 복합체(ideological complex) 내부에 자리하게 되는 이미지(image)"로 정의한다. 그는 "사물이나 사건의 실재(actuality)에 대해 보장된 증인인 사진의 특권적 지위(privileged status)"를 "과학 시설, 정부부터, 경찰, 법원 같은 사회적 형성물의 어떤 특권적 기구의 운영"과 연관시켰다.

Joan M. Schwartz, 1995 *"We make our tools and our tools make us": Lessons from photographs for the Practice, Politics, and Poetics of Diplomatics*, Archivaria (40) p.54 John Tagg, 1988 *The burden of representation. Essays on Photographies and Histories*, Amherst p.188 에서 재인용.

까지 「보안법」, 1925년 이후 「치안유지법」, 1940년 이후 「국가총동원법」을 들 수 있다.[15] 내용 외적인 부분은 기록의 생산 의도를 보여준다. 사진 촬영 방식, 양식과 기재항목의 변화 등이 기록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기존 연구는 기록의 변화가 반영하고 있는 외적 맥락을 포착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변화는 기관이 정보를 축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던 부분, 제도가 진전되는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기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핵심 정보가 될 수 있다.

---

15) 「保安法」(1907. 7. 27., 법률 제2호,)은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사・집회를 해산 또는 금지하고,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동작과 언론 또는 타인을 선동교사 혹은 사주하여 치안을 방해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한 치안 관련 법령이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기록원, 2017 『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84~85쪽

「治安維持法」(시행 1925. 4. 29., 법률 제46호)은 일제가 고안한 대표적인 사상통제법으로 당시 일본에서 체제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던 사회주의 운동을 단속하고 지배질서를 재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안되었다. 조선에서도 1925년부터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었다. 그 배경으로 첫째,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었고 둘째, 결사조직에 대해 통제를 가할 법률의 보강이 필요했고 셋째, 1925년 2월 蘇日協約 체결로 조선이 소련의 赤化宣傳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법령을 조선에 서둘러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장신, 1998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 (19), 81~84쪽.

「國家總動員法」(시행 1938. 5. 5., 법률 제55호)은 일제가 만주사변 이후 중일전쟁 장기화에 따라 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총동원계획을 실시하기 위해 시행한 법이다. '국가총동원'에서 담당하는 물자와 업무, 사업 등의 범위와 이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정한 것이지만 필요한 사항은 勅令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대부분을 통제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戰時인 경우 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법적 구속력이 적용될 수 있었다.

안자코 유카, 200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69~76쪽.

일제는 「보안법」으로 병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3차에 걸친 「치안유지법」 개정으로 사상을 통제, 노동운동을 탄압하였고 궁극적으로 「국가총동원법」같은 장치로 조선을 병참 기지화하고 수탈했다. 鈴木敬夫는 이런 法政策이 궁극적으로 조선 민족을 침략전쟁을 위한 자원으로 간주하고 "황국 일본을 위해 殉國시키는 것을 지상 목적으로 한 것"이라 보았다.

鈴木敬夫, 1989 『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341~344쪽, 359쪽

일제강점기 언론은 경찰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카드와 명부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왔다. 인물카드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 내내 누적된 기록이고 상당히 많은 수량이 제작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인물카드는 경찰 업무에 아주 기초적인 자료로 제작된 기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이 각종 수사자료와 기록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다른 기록과 연결되고 확장성을 가지게 되는 지점이 인물카드에 드러나 있다. 경찰은 사진 뿐 아니라 지문과 범죄수법 등을 범죄수사를 위한 감식 도구로 수집, 기초자료로 축적하고 연구하여 경찰 수사를 발전시켰다. 일제가 발전시킨 경찰업무 및 수사기록에서 한국 경찰이 무엇을 채택하고 응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나, 초기 과학적 수사 개념을 보여준다는 것도 고려할 만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해방 후 경찰기관의 인물카드 활용 및 관리상황까지 살펴보았다. 기록물은 해방 이후 제작된 두 장의 카드를 포함하고 있다. 해방 후 생산된 카드는 한국 경찰이 일제 경찰에 뒤이어 인물카드를 생산한 정황을 보여준다. 카드 형식 역시 일제 경찰이 생산한 카드와의 연결성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인물카드는 일제 경찰 제도와 한국 경찰 제도의 연계를 직접 제시하는 기록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인물카드에는 한국 경찰이 기록물을 관리하려고 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흔적은 치안국과 치안본부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던 기간 동안 취급 상황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은 가운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 경찰이 일제의 인물카드 체계를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인물카드는 참조기록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물은 관리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른 위상을 가질 수 있다. 출처는 보통 생산기관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 축적이 멈춘 후 기록의 이동으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게 된 기관 역시 출처로 간주할 수 있다.[16] 한편 기록학의 '기능 출처 주의'는 한국 경찰 생산 인물카드 계통 해석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틀이다.[17] 기능이 어떻게 이어지고

16) "기록관이나 보존기록관, 매뉴스크립트 보존소로 이관되기 전, 기록을 생산・축적・유지・활용한 조직이나 개인."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50쪽 '출처(provenance)'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기록물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해방 이후 인물카드 체계가 연결되는 정황과 기록물 보유 기관에 따른 관리상황까지 살펴보면서 출처개념 범위를 확장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특성을 기초로 본 연구는 기록물의 생산과 축적, 관리 과정을 추적하여 인물카드가 한 건, 한 매로서 단지 어떤 인물의 독립운동 사실을 증명하는 기록일 뿐 아니라 자체로 고유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한다. 최종적으로 기록물에 대한 해석과 이용의 가능성을 넓히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17) "기록 생산자나 생산 조직이 아니라 이들의 기능에 의해서 기록의 근원을 정하는 것. 이러한 기능 출처 주의는 조직 및 행정의 변천으로 인해 여러 생산 조직을 출처로 가진 기록 시리즈를 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 위의 책, 47쪽 '기능 출처 주의(functional provenance)'

제 2 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인물카드에 대한 선행연구는 양식과 기재사항을 분석하여 기록의 생산목적 및 성격을 밝히려 했다. 생산목적은 기관의 업무 및 목표와 관련이 있다. 이애숙은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한 주체를 경찰 관련 기관으로 보았다.[18] 한편 박경목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카드를 일괄관리하였을 것이라 추정했다. 인물카드에 담긴 정보 상당이 수형 관련 정보이며 사진의 70 퍼센트 이상을 형무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수감자 관리를 카드 생산 주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19]

본고는 이애숙의 연구가 규정한 기록의 성격을 기초로 삼았다. 초기에는 수형기관이 인물카드를 제작・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 양식을 검토하면 경찰기관의 이용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출소 정보를 비롯한 수형 관련 정보 역시 포괄적인 인물 연대기 확보 및 재범 여부 등을 고려, 범죄예방에 초점을 둔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지문, 범죄 수법, 외모 유형 등을 분류하고 표준화시키려는 시도가 드러난 항목들은 기록이 수감된 인물에 대한 이력 관리 이상 재범예방 등 수사자료로서 기능을 기대하고 제작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한 인물이 각각 다른 사진이 부착된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역시 수사자료 수집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인물카드를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가 생산・관리한 기록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기록 축적 과정의 표면과 맥락 즉, 기록 양식과 기관의 변화를 짚어보았다. 기록 양식과 기관의 변화를 병렬로 비교하면서 시기와 제도에 따른 변화와 흐름을 포착하고, 기록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유추하여 기록의 다층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물카드의 분석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6,264건의 카드를 열람하였다.[20] 사진을 포함, 카드의 형

---

18) 이애숙, 2014 앞의 논문, 5~11쪽.
19) 박경목, 2018 앞의 논문, 217~221쪽.
20) 기록물을 살펴보면 한 명의 인물이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카드의 총 수량은 6,264건이나 기록이 담고 있는 인물의 수는 별도로 생각해야

태와 양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카드 여백에 기재한 정보 역시 기록의 쓰임새와 방향성을 밝히는 단서로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록의 생산자 내지는 관리자 관점에서 필요로 하던 정보를 파악하고 기록이 활용된 활동을 유추했다. 양식의 변화를 통해 기록이 어떻게 기관의 활동과 효율성 증가에 기여하고자 했는지 추적했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과 법령을 검토했다. 일제강점기 경찰기록관리는 물론 사진 생산 및 관리에 대해 알려진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경찰이 사진과 함께 수집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문에 관련된 법령이 있다. 지문번호는 기본 신상 항목과 함께 인물카드 최초 양식부터 포함되어 있다. 지문은 사진과 더불어 필수적인 수사 도구로 여겨져 왔다. 사람마다 고유의 문양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외모 변화, 각도나 조명으로 인해 비교가 어렵게 촬영된 경우 등 식별 기능상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사진보다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분석을 위해 별도의 기구와 전문가가 필요한 지문에 비해 사진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이용이 간편하고 휴대할 수 있어 둘은 서로 보완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지문 수집에 대한 규정은 특히 인물카드제도의 대상 및 관리 방식을 밝히는데 매우 유효한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1960년대 생산된 인물카드가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일제강점기 생산된 카드와의 연결성을 보기 위해 60년대 피의자 사진 생산 관련 규정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카드식 인물 관리 방식이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경찰 직제규정을 검토하고 형사과 업무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록물을 생산하고 관리한 기관의 변천과 범죄 수사 정책, 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와 경찰관계자가 주 독자층이었던

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서는 인물별로 카드를 열람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다. 인물이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카드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인물별로 카드를 묶어놓았다. 사이트 분류에 따르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수는 총 4,857인이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동일인을 同名異人으로 파악하여 별도로 분류해놓은 경우를 몇 건 발견하여 약간의 오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간행물 『경무휘보(警務彙報)』 기사를 검토했다. 형사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일본 내무성 경보국에 20년간 종사했던 오니시 테루카즈(大西輝一)가 펴낸 『(防犯搜査)刑事警察要綱』을 참조했다. 특히 『경무휘보』는 말단 관서부터 중앙기관까지 다양한 층위의 경찰관계자가 기고한 기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 실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로 적합하다 사료했다. 위와 같은 자료들을 검토함으로써 기관의 행위와 제도의 변천, 그에 대한 결과물인 기록의 양식변화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드러내고자 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물카드 생산기관을 분석할 것이다. 먼저 초기 인물카드 관리기관을 추론해볼 것이다. 그리고 이후 인물카드 생산 및 관리 주체로 추정되는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설치 배경과 업무, 변천사를 파악한다. 기관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은 기록을 활용한 업무가 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를 유추하고 기록생산 목적과 이용범위, 당시의 가치 등을 파악할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방 후 감시대상 인물카드의 활용을 살펴본다. 해방 직후 경찰 직제와 그 시기 생산된 카드 두 장을 검토한다. 60년대 공포된 '피의자사진관리규정'을 살펴보면서 일제강점기 인물카드의 생산·관리 방식을 되짚고 카드식 인물관리 방식이 지속된 배경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인물카드가 어떻게 다시 발굴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기록물이 열람·제공되는 방식을 검토하면서 현재 기록물의 가치와 이용가능성을 재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인물카드에 부착한 사진과 양식을 분석한다. 2장의 내용이 기록물의 외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3장에서는 기록물의 표면과 외적 맥락이 교차하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다. 인물카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과 요소를 분석해 기록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정보 유형의 변화를 통해 기관의 목표와 지향성을 드러낸다. 정보가 보강되고 기록이 발전해가는 양상을 추적하여 기관의 목표가 기록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추론할 것이다.

제 2 장 보존관리 배경과 관리기관의 업무변동

제 1 절 인물카드 관리배경과 형사과의 업무

초기 인물카드를 관리한 주체는 경찰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21] 초기 양식에 부착한 모든 사진은 복사한 사진을 제외하면 모두 수형기관에서 촬영되었다. 기재항목 역시 수형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 중에서도 지문번호 항목은 수형기관이 초기 인물카드 관리기관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에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초기 양식이 사용되던 시기(1919~1922) 수형기관과 사법부에서만 지문을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문번호는 인물카드 모든 양식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으로 내용도 상당히 충실히 기재되어 있다.

지문은 '지문취급규정'(1912.4.1., 조선총독부훈령제46호)에 의해 수집하고 관리했다. 규정은 지문 수집대상, 관리기관, 관리 방식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징역 또는 금고(禁錮) 혹은 태형에 처한 자는 지문 인상(印象)을 징취(徵取)한다.

제2조 지문 인상은 형 집행 개시한 당일, 형 집행유예를 언도(言渡) 받은 자는 석방할 때 징취한다.

제3조 지문은 지문원지에 압날(押捺)한다.

제4조 지문원지는 한 사람당 2매 작성하고 그 중 하나는 해당 감옥 또는 분감에 보관, 다른 한 매는 1개월분을 모아 묶어서 지문원지송부서를 첨

---

21) 이애숙은 초기 카드를 관리하고 제작한 주체를 경기도 경찰부 고등경찰과로 추정했다. 고등경찰과는 경기도 경찰부에 1919년 보통경찰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설치되었다. 초기 카드(A 양식)에 삼일운동 관련자들과 유사종교 관련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고등경찰과는 이 시기 독립운동 및 유사종교에 대한 사찰과 단속을 담당하던 부서였다. 또한 카드에도 고등과 수배용으로 만들어진 카드와 고등과 사진장에서 복사한 사진이 부착된 카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애숙, 2014 앞의 논문, 8쪽.

부하여 바로 본부 사법부(本府司法府)에 송부한다.

제5조 형사피고인 특히 전과 혐의가 있는 자는 지문 인상을 징취, 본부 사법부에 송부하여 대조를 구한다.

제6조 지문원지를 작성할 때는 바로 기존 지문원지에 동일한 원지가 있는지 조사한다.

제7조 지문의 대조로 전과가 발견될 때는 바로 최종 판결이 행해지는 재판소 검사에게 통지한다.

제8조 전과발견 결과 가중형의 결정을 받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지문원지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길 때는 본부 사법부에 통보한다.

제9조 창상(創傷) 기타 사고로 인해 수형자의 지문에 변경이 생기면 다시 지문을 징취해 제4조 수속을 행한다.[22]

지문 문양이 중심항목인 지문원지(指紋原紙)는 사법 절차상 참조해야만 할 중요도가 높은 기록이었다. 지문을 대조해서 전과가 있다고 확인하면 형을 가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문 수집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수형 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지문원지는 사법부가 수집했고 지문대조도 사법부에서 이루어졌다.

지문원지는 전과자 식별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록이었기 때문에 판결 및 수형 정보 항목 중심이다. [그림 2-1] 지문원지 양식을 살펴보면 전면은 양손 열 손가락을 압날(押捺)할 수 있는 공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23] 그 외 분류번호, 성명과 이명, 생년월일, 출생지, 주소, 원적, 신분, 직업 등의 신상정보 항목이 있다. 원지 작성 일자와 사법부 검사(檢査)를 받은 일자를 기재하는 란을 별도로 두어 사법부에서 원지를 송부받은 후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후면에는 신장과 특징, 판결받은 이름, 판결 확정년월일, 언도관서, 죄명, 형명, 형기, 출옥년월일, 집행관서, 출옥사유 그리고 당사자가 서명(自署)을 하게 했다. 지문원지는 당사자의 서명을 받고, 문서 작성일을 남기고, 사법부가 검토한 날까지 기재하게

22) 조선총독부 관보 제476호, 16면, 1912.4.1. '指紋取扱規程' (조선총독부훈령제46호), 조선총독부관보 디지털컬렉션.

23) 조선총독부 관보 제476호, 17면, 1912.4.1. '樣式第一號 指紋原紙表面', '樣式第一號 指紋原紙裏面', 조선총독부관보 디지털컬렉션.

하는 등 공신력을 확보할 장치를 갖추었다.

[그림 2-1] 지문원지(指紋原紙) 전면과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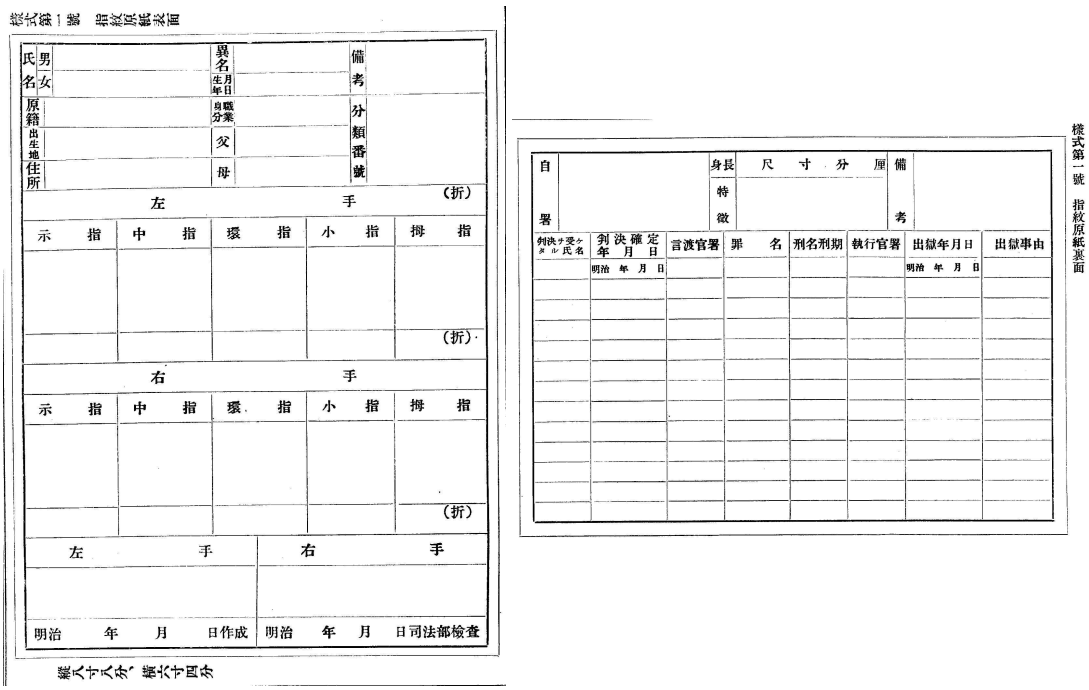

지문원지는 사진 대신 지문을 넣게 되어있을 뿐 수형정보 중심 초기 인물카드인 A 양식과 상당히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자 서명란이나 작성자 확인란 같은 항목은 A 양식 뿐 아니라 모든 양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인물카드는 지문원지와 같은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 참조용 기록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지문이 규정에 의해 관리 되었기 때문에 인물카드 모든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문번호는 기록물에 대한 신뢰성을 일부 담보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A 양식 인물카드에 부착한 사진을 생산한 기관은 서대문 감옥과 경성감옥 두 곳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감옥에서 인물카드를 일괄관리했다기보다 모든 형무소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사법부에서 인물카드도 관리했을 것으로 보는 게 더 그럴듯하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지문원지나 인물카드를 관리했을까. 1912년 사법부는 민사과(民事課), 감리과(監理課), 형사과(刑事課)로 구성되어 있었다. 민사과는 민사 및 비송사건(非訟事件) 재판 관련 사무를 감리과는 재판소감옥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

항, 변호사, 소송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형사과는 형사 재판 사무, 은사복권 및 형 집행, 범죄인 인도, 감옥 업무, 감옥 옥사 건설 기획, 감옥의 경제 및 작업, 가출옥 및 출옥인 보호 범죄인 이동(異同) 식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다. 1915년 이후 감옥과(1924년 이후 行刑課)가 형사과가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분담했고 1930년대 법무국 과(課) 단위 아래 계(係)단위 업무 분장 상황이 밝혀져 행형과 아래 지문계가 별도로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다.[24] 형사 재판 및 범죄인 식별 업무를 담당했고 이후 재판소에 병치된 검사국 관련 검찰사무까지 관장하게 되는 형사과가 규정 반포 시점에는 각 형무소에서 보낸 지문원지 관리를 담당했을 법한 부서이고 인물카드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문이 가진 식별 기능은 경찰에게도 유용했다. 경찰지문은 수형자 지문과 마찬가지로 누범(累犯)을 찾아내는 기능 뿐 아니라 범죄 수사라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수집되기 때문에 채취범위와 지문원지 기재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25] 조선에서는 1920년 경찰지문채취 관련 규정이 제정되었고 1922년 말 설치된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가 이를 관리하였다. 형사과 설치와 카드 양식이 교체되는 시기는 맞물려 있는데 경찰지문수집 및 형사과 설치 맥락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26]

1919년 8월 20일 대대적인 '조선총독부사무분장규정(朝鮮總督府事務分掌規定)' 개정 이후 외청이었던 경무총감부가 폐지되고 조선총독부 산하에 경무국을 설치했다. 각 도 내국으로 경찰부가 설치되었고 도지사가 경찰권을 행사하였다.[27]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1922년 12월 '경기도사무분장규정' 개정에 의해 설치되었다.[28] 주된 업무는 사법경찰과 고등경

---

24) 사법부는 조선총독부 아래 조직이다. 사법기구는 1912년 조선총독부재판소령 개정(1912.3.18.,제령 4호)으로 '고등법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구재판소'의 4급 3심 제도가 '고등법원, 복심법원(覆審法院), 지방법원' 3급 3심으로 변경되며 틀이 잡힌다. 검사국은 각 재판소에 병치 되어있는 조직이었다.
문준영, 2010『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442쪽.; 국가기록원, 2012『일제문서해제 행형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15~21쪽.

25) 大西輝一, 1936『(防犯搜査)刑事警察要綱』, 124~125쪽.

26) B양식은 1923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7) 1921년 2월 26일 개정에서 제3부가 경찰부로 바뀐다.

28) '京畿道事務分掌規則'(조선총독부경기도훈령제42호, 개정 1922.12.8)에 따르면 형사과

찰에 대한 범인 수사 사무를 맡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29]

[그림 2-2] 1930년 朝鮮警察機關一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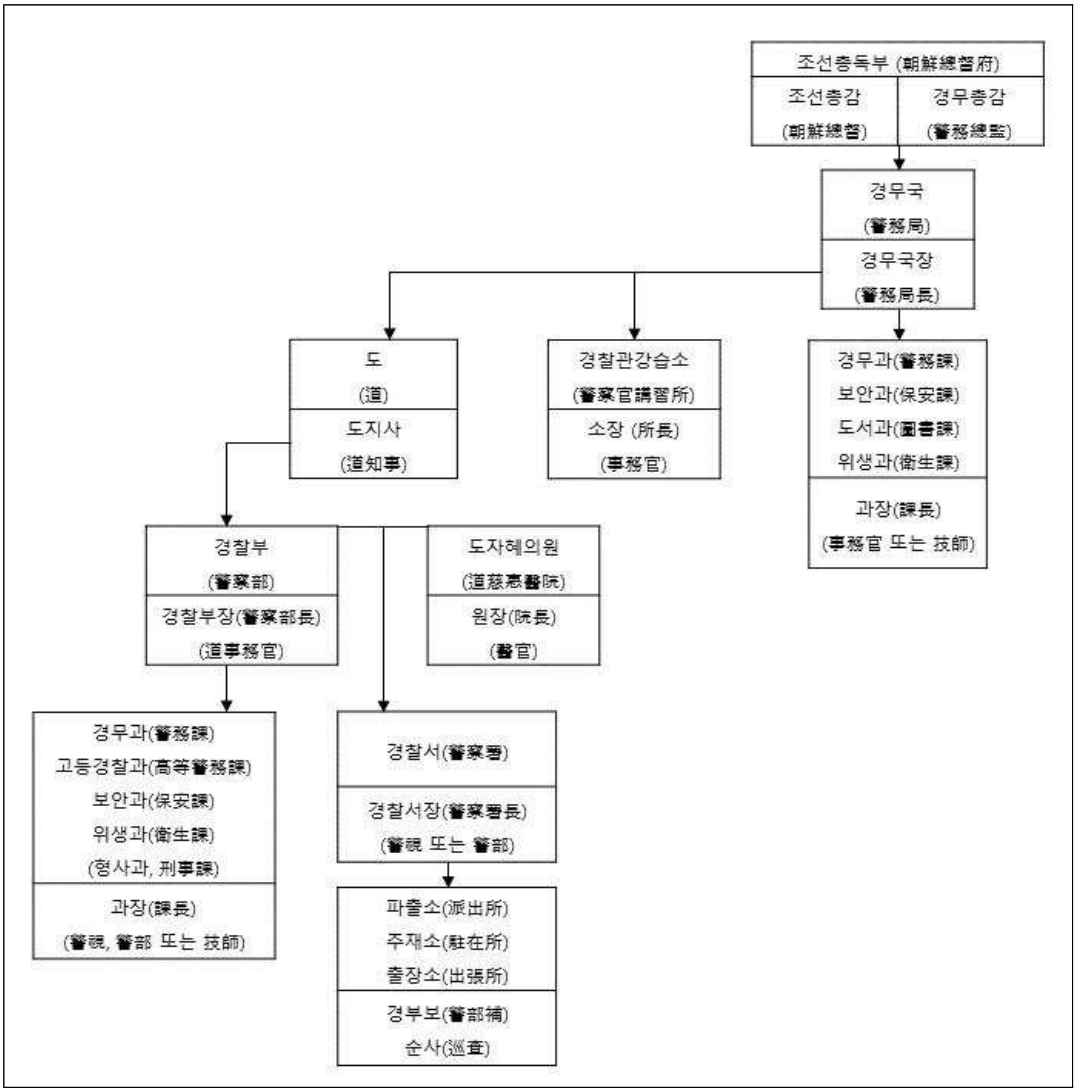

출전 :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朝鮮警察概要』

비고 : 원문 도표 상단에 비고로 '현재 경기도에만 형사과가 설치되어 있음'이라고 표기됨

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司法警察에 관한 사항 ②犯罪卽決事務에 관한 사항.
조선총독부 관보 제3099호, 1면, 1922.12.9., '京畿道事務分掌規則'(조선총독부경기도훈령제42호, 개정 1922.12.8.) 조선총독부관보 디지털컬렉션.

29)『동아일보』1922년 12월 10일「刑事課新設, 京畿道警察部에」.

그림 [2-2]은 경찰기관 위계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30] 1930년 경찰기관 도표이지만 1919년 대대적인 관제개정 이후 경찰기관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위계를 가지고 있었다. 형사과는 총독부 아래 중앙 경찰기관인 경무국이 아닌 지방 경찰부 산하에 설치된 부서였다. 도 경찰부 밑으로 경찰서들이 포진해 있고 그 하위 조직으로 지역 구석구석 파출소・주재소・출장소가 있었다.

일본 경찰은 경찰 직무를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했다. 일본에서 사법경찰은 재판소에 설치된 검찰의 사무로 범죄의 수사부터 체포까지 담당했다. 경찰은 검사를 보좌하는 수준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 검사 인력과 자원의 문제, 「형법대전」에 범죄에 상응하는 벌이 이미 정해져 있어 판・검사의 역할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상황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지휘를 기다리다가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실질적 수사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었고 1908년 '민형소송규칙'(1908.2.26., 법률 제13호)으로 일찌감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31] 「형법대전」 폐지 후 제정된 '조선형사령'(1912.3.18., 제령 제11호)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보조하고 검사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32] 법령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 밝히고 있음에도 경찰은 범죄즉결제도와 행정검속제도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

30) 1919년 개정 직후 도서과 대신 고등경찰과가 있었다. 도서과는 1930년에 신설되었다. 朝鮮總督府警務局, 1930『朝鮮警察概要』7쪽.

31) 양홍준, 2006「통감부시기 형사경찰제도와 범죄 수사」,『한국사학보』22., 170~172쪽. '민형소송규칙'은 검사의 강제수사권한을 사법경찰에게도 대폭 부여했다. 경찰에게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은 한국인 군수의 재판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거론되어온 것이었다. 경찰이 당시 다른 지방 행정 및 사법 기관에 비해 인원과 조직 면에서 가장 완비되어있는 조직이었다는 점도 경찰에 많은 권한이 부여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검사의 수가 지방재판소당 2~3명꼴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경찰관은 재판소의 인력 부족으로 민사절차 업무를 취급하기도 했다.
문준영, 앞의 책, 역사비평사, 554~555쪽.

32) 법령에서 명시한 사법경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총독부 경무부장 2. 조선총독부 경시, 경부 3. 헌병장교, 준사관, 하사
국가기록원, 2017 앞의 책, 292쪽.

할 수 있었다. 범죄즉결과 행정검속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행정경찰 영역에 속했기에 검찰이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경찰의 직무권한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될 수 있었다.[33]

사법경찰이 범죄가 일어나고 난 뒤 발생하는 업무, 범죄의 수사 및 처리를 관장했다면, 행정경찰은 그 외 방범 사무를 담당했다. 행정경찰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경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회활동 영역이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일탈 행위를 단속하는 행정경찰 업무와 관계가 있었다. 행정경찰의 직무영역은 상당히 넓었다. 경찰은 호구조사부터 종교, 여행, 직업, 교통, 정치적 행위, 사망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개입할 권한을 가졌다. 정치, 출판물, 종교 등 분야 사찰과 요시찰인 단속을 소관하는 고등경찰 역시 예방경찰 영역에 포함되었다.[34]

형사과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업무와 행정경찰 업무, 특히 고등경찰의 사무를 담당하여 방범 및 범죄 발생 전후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관여하는 부서로 설계되었다. 다음 기사에는 형사과 업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실려있다.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요새 범죄가 격증됨을 기회로 하여 속담에 '경찰의 귀'라 하는 형사경찰(刑事警察)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고... 신설 형사과로 말하면 고등경찰의 일부와 종래 보안과에 붙어있던 사법계 및 지문계(指紋係)를 합병 통일한 것인바 서무・수사・감시의 세 분과(分科)로 되야 과장(경시) 한 명과 기주임(경부) 한 명과 순사 약간 명을 더 두어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할터이라... 형사과의 신설로 그전보다 행동이 민활해지는 동시에 연락도 일층 긴밀히 통일

33) 경찰은 '사법경찰관직무규정'(1912.4. 총독부훈령 제46호)에 의거 취지를 검사에 통지한 후 현행범 및 준형행범에 대해 가예심처분 또는 급속처분을 가할 수 있었다. 또한 '행정집행령'(1914년 제령 제23호)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 보호검속을 공공질서를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예방검속을 할 수 있었다.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검사국에 적극적인 수사와 직접 수사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었지만 범죄 수사에 대한 주도권은 대체로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
문준영, 2010 앞의 책, 592~594

34) 장신, 2004「경찰제도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562~565쪽.

될 것으로 기대되더라[35]

한편 경찰관형사강습소의 야마다 카즈타카(山田一隆)는 형사과가 범죄 수사상 연락 중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감독기관으로는 내무부 관계와 사법부 관계와 두 가지가 있지만 그 실제 연락기관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가령 중앙탐정국과 같은 혹은 분할적 연락기관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지만 만약 설비가 완성되어 이러한 기관이 수배에 또는 감식에 있어서 수사실행 직접 감독처럼 맡거나 고문으로서 수사상 다대한 힘을 부여받을 때는 자주 연락되고 공의 효과 헛되지 않게 믿는 것이다... 먼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조선에도 경기도에 최근 보안과에서 독립하여 형사과가 생겼는데, 조선 최초의 시도로 크게 축복하고 또한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한다.[36]

교통 발달은 범죄자의 이동 범위를 확장시켰다. 각 지역 수사 기관 간 긴밀한 연락과 협조가 필요하고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범인 수사 및 수배의 효율성을 위해 각종 수사기관 연락망을 관장할 중심 기관의 필요성이 커졌다. 중심역할 수행에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은 기관의 감식 설비 보유 여부였다.[37] 정보를 배포하고 확인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각종 방범·수사 사무와 타 기관과의 연락처리가 주요 업무로 경기도 뿐 아니라 전 조선 경찰 업무 효율성도 염두에 두고 설치된 기관이었다. 감식과 관련된 지문 관련 사무도 완전히 형사과의 소관이 되었다.

한편 형사과는 전국에서 오직 경기도 경찰부에만 설치되었다. 형사과는 경기도 경찰부에 설치된 다음 해에 경북 경찰부에도 설치되었으나 불과 1년 후 폐지되었으며,[38] 경기도 경찰부도 행정정리로 사라질 뻔하였

35)『매일신보』1922년 12월 12일「京畿道警察部에 獨立刑事顆新設, 수사의 민활을 도모하여 이번에 특별히 신설한 목적」.
36)『警務彙報』제212호, 1923년 1월「刑事制度に對する希望一, 二」山田一隆, 40쪽.
37) 山田一隆, 1923 앞의 기사, 40쪽.
38)『매일신보』1923년 7월 22일「慶北의 刑事課, 8월 1일부터 실현」;『시대일보』1924년 12월 10일,「警察部刑事課 今年內로 廢正」.

으나 결국 존속되었다.[39] 그렇다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만 존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범죄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과가 설치된 1922년부터 1930년까지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실시 전후 정부 기관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던 사상범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었다.[40] 경무국과 법무국에서는 예산을 투여해 간수와 고등경찰을 증원하고, 사상범이 일반 범죄자에게 사상을 전파할 수 있다고 여겨 이 둘을 분리하기 위한 독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양적으로 상황을 떠받쳐야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사상범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자료와 데이터를 축적해야 했다.

형사과의 존치는 「치안유지법」 시행 바로 직전에 결정되었다. 표면적으로 타도와 비교했을 때 2배에서 7배에 달하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경기도 내의 치안 상황이 근거로 제시되었다.[41]

그러나 형사과가 이미 사상범을 비롯한 범죄자에 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폐지 논의와 존치 결정 사이 『시대일보』와 『매일신보』에 나란히 같은 내용의 짧은 기사가 실렸다.

경기도 형사과에서는 과학적 범죄가 해마다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대정 구년(1920년) 칠월 이래로 지문에 의한 수색 방법을 연구하여 왔다는 바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의열단, 좌경주의자, 기타 제령위반사건 등의 범죄자의 지문 등이 일만 사천 칠백 구십 여매에 달한다는데, 금후로는 더욱 부내 각 경찰서와 연락하여 지문 취집에 노력하리라더라[42]

---

39) 『동아일보』 1925년 1월 15일 「道刑事課復活」.

40) 「치안유지법」은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 그리고 독립운동을 처벌하는데 폭넓게 적용되었다. 죄명이 기재되어 있는 인물카드 5,674건 중 2,808건이 「치안유지법」 위반자로 약 49%를 차지한다.
이애숙, 2014 앞의 논문, 23~24쪽.

41) 『조선신문』 1924년 12월 27일 「お顔は潰れても治安の爲には刑事課存續も結構」.

42) 『매일신보』 1925년 1월 14일 「중대범인의 指紋, 경기도에만 일만사천팔백매」.

경기도는 도 경찰부 중 가장 먼저 지문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지문은 원래 '지문취급규정'에 따라 사법부에서 관리하고 각 감옥에서 기결수를 대상으로만 채취하고 모으던 것이었는데 경찰 업무에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문원지취급규정(指紋原紙取扱規程)'(1920.6.15., 조선총독부경기도훈령제16호)을 발표하고 구류 이상 형에 처해야 할 형사 피고인에 대해 지문을 취하기로 했다. 각 서에서는 원지에 양 손의 인상(印象)을 압날하여 두 통을 작성하고, 한 통은 서에 다른 한 통은 경찰부(第3部)로 송부하여 보존하게 했다. 이어서 함경남도(1920.12.28., 조선총독부함경남도훈령제47호)와 경상북도(1924.6.5., 조선총독부경상북도훈령제20호), 평안북도(1927.9.16., 조선총독부평안북도훈령제19호)에서도 '지문원지취급규정'이 공포되어 경찰이 지문원지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규정 세칙은 모든 지역이 거의 상동하나 경상북도 규정의 경우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정해놓았다.

제1조 경찰서에서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를 새로 수용할 때는 지문원지에 지문 압날을 한다.

1. 형법 기타의 법령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피의자. 단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과실죄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구류수(拘留囚), 전과를 숨기거나 또는 이름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자
3. 형사시찰인
4. 불량소년으로 개전(改悛)의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3]

경찰은 사법부와 별개로 지문수집 대상 범위를 상당히 넓게 설정했다. 사법부가 형이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했다면, 경찰의 경우 피의자 뿐 아니라 구류수나 시찰인, 행정검속자 등 죄를 저지를 가능성

43) 조선총독부 관보 제3555호, 4-5면, 1924.6.12., '指紋原紙取扱規程'(조선총독부경상북도훈령제20호), 조선총독부관보 디지털컬렉션.

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모두 지문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44] 경기도는 규정 시행 시작부터 지문 수집이 전과자 발견 및 범인 수색 등 경찰 업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했다. 지문은 얼굴과 달리 변하지 않고 사람마다 고유의 문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별에 신뢰도가 높은 증거 자료로 여겨졌다.[45]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1926년부터 전 조선의 지문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방경찰서에서는 범죄 수사 시 법무국은 물론 경기도 경찰부에서도 별도로 지문조회를 할 수 있었다.[46]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지문 확대 사진기 및 자외선 사진기 등을 구입하는 등 감식을 위한 최신 설비도 갖추기 시작했다.[47] 지문 수집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25년 기관은 일만여 매의 지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27년, 불과 2년 만에 육만여 매를 보유하게 되었다. 수사 효율을 위해 계획하고 있던 '범행행적카드' 제작 같은 사안은 뒤로 미뤄두고 지문의 수집 범위를 늘려 십만 개쯤으로 만들겠다고 계획할 정도였다.[48] 지문이 방범 도구로서 상당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한편 수량을 정해놓고 수집에 접근하는 방식은 경찰이 상당히 무자비하게 지문 수집을 진행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문수집제도는 기관이 성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전체 수사 기관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를 통해 지문조회를 했다. 법무국도 지문을 취급하긴 했으나 법무국은 왼손을 표준으로 경무국은 오른손을 표준으로 지문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류를 줄이기 위

---

44)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경시 野村薫은 전과 이외의 경력을 취조 등 조사과정에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법무국의 지문과 별개로 경찰지문이 따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지문 채취 대상은 전과자, 형사피의자, 구류수, 행정검속자, 적잖이 경찰에 유치된 자 포괄한다.
『警務彙報』 제319호, 1932년 11월 「警察指紋統一實施滿一年に際し再び警察指紋の使命竝に犯罪手口に就て (1)」 野村薫, 47~48쪽.

45) 『매일신보』 1920년 7월 4일 「指紋法實施 경기도가 솔선, 범죄수색상에도 제일 좋은 지문법」.

46) 『매일신보』 1926년 6월 24일 「京畿道刑事課에 全鮮的指紋取集, 경시텽의 어린싹」.

47) 『중외일보』 1927년 1월 13일 「預測搜査에서 科學的搜査에, 방침변경한다는 경찰부 경찰도 세상을 쌀하진보」.

48) 『중외일보』 1927년 5월 7일 「道刑事課 指紋蒐集에 全力 순라꼴사건에 자극을 바더?」.

해 관계 기관은 양 측에 모두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이 종료되어 수감 중인 상황에 뒤늦게 지문조회를 통해 재범자임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조사과정부터 지문대조를 통해 재범사실을 판별할 필요성도 있었다.[49] 형사과는 수사자료 관리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범죄 통계를 내놓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50] 중요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주요한 설치 목적 중 하나인 수사기관 연락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

형사과의 업무는 사법경찰과 고등경찰의 영역을 포괄하였다. 사상범부터 형사 잡범까지 상당한 범죄행위가 형사과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수사자료 수집과 기록생산 범위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자는 물론이고 모종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자까지 포괄했다. 따라서 경찰은 사법경찰 영역보다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각종 감식 자료와 기록을 생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제경찰은 늘어나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할 집적된 지식과 자료를 관리할 기관이 필요했다. 교통의 발달과 활발한 인구 이동도 형사과 같은 중앙수사기록관리 기관의 필요성을 가증한 배경이었다. 형사과는 지문 및 사진, 범죄 수법 수집을 토대로 범죄 수사 및 연구를 진행했다.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기록 생산은 수사기관 중심지 역할을 할 명분을 제공했으며 감식기관으로 확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

49) 『警務彙報』 제234호, 1925년 1월 「刑事警察に就ての片片」 吉川澄一, 78~79쪽.
50) 『동아일보』 1924년 2월 22일 「京畿道內의 犯罪統計」; 『시대일보』 1925년 7월 17일 「범죄재화통계, 경기도 경찰부 발표」.

제 2 절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업무변동과 사상범 관리

3·1운동 이후 1920년대 일제 경찰은 무단적, 억압적 통치방식에서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보통경찰제가 실시되었고 사회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민중경찰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일제에 순응하는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선전에 불과했다.

1925년에는 보통경찰제를 내세운 후 확충했던 경찰 인원을 행정정리를 통해 대폭 줄이는 등 경찰비 예산을 삭감했다.[51] 조선총독부는 '능률증진'이라는 용어를 앞세우고 소수의 인원으로 효과적인 행정을 거두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관변 청년단체 육성같은 민중의 경찰화, 경찰관 교양을 강화 등이 경비 절감으로 인한 인원 부족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52] 그러나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행정정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 기록과 감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을 확장 시켜갈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능률 증진' 기조에 걸맞는 기관으로 여겨진 것이다.

한편 민중에 대한 조사와 사찰은 일본 근대경찰제도 형성기부터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경찰은 범죄의 사후 처리보다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행정경찰 성격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근대경찰 설립과정에서 영미권과 프랑스 경찰제도를 조사했는데, 1875년 '행정경찰규칙'과 '주의보규칙(注意報規則)'이 그 결과물이다. 일본 근대경찰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칙은 민중을 호구별·개인별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집회·언론을 비롯 혼인·영업·위생 등 거의 모든 생활 활동이 감시 범주 내에 있었다. 사찰은 사회 곳곳에 규제가 미쳐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비하는 것이 경찰의 주요 업무이자 목적이었기에 채택한 방책이었고, 사회안정

---

51) 1925년 경찰 예산은 전년 대비 2,303,719엔 감소했는데, 1932년 역시 행정정리로 인한 감소액 769,578엔의 거의 세 배 비용이다.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2『韓國警察史』1, 내무부 치안국, 984쪽.

52) 김정은, 2001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내용과 논리」, 『역사와 현실』 39, 217~219쪽.

도모는 '국가'의 목표 달성이라는 대의를 위해 선행해야 했다.[53]

시찰과 사찰은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물이 주 대상이었으나 일반 대상 호구사찰도 이루어졌다. 지방 행정기관에 비해 체계를 갖추고 있던 경찰은 1910년대 전반까지 중앙정부차원에서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 실시한 인구 조사인 호구(戶口)조사와 민적(民籍)사무를 담당했다. 1909~1910년 실시된 민적실사 실무를 담당했던 경찰은 규정이나 양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도 '경찰 취체(取締)상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조사할 수 있었다. 민적사무는 1915년 지방 행정 기관으로 이관되었으나 경찰 목적의 별도 호구조사 장치인 '호구조사규정(戶口調査規程)'이 마련되었다.[54]

일본에서 발행된 형사경찰 실무를 소개하고 있는 『형사경찰요강(刑事警察要綱)』에는 방범방책 하나의 예로 '호구사찰(戶口査察)'을 소개하고 있다. 호구사찰은 담당 지역의 경찰이 거주자의 행실과 내력, 생활형편 등을 두루 살피는 것으로 저자는 '강제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논란이 있으나 법적 강제를 의미하지 않는 사실상의 행위'로 정의한다. '조사'대신 '사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에게 직접 청취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등 사실상 조사와 다르지 않았다. 또한 때로는 관찰하고 때로는 선도해야 한다고 하는 등 조사 이상의 개입이 제시되기도 했다.[55]

---

53) 나루사와 아키라, 2004『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박경수 역, 소화, 148~150쪽.

54)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6개월마다 1회 戶口調査를 시행하고 호구조사부를 작성해야 했다. 호구조사부에는 본적(외국인의 경우 국적 본적과 주소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주소, 家稱이 있는 경우 家稱, 신분, 직업, 位勳功爵, 씨명, 생년월일 그리고 거주한 년월일 및 種痘나 痘瘡 등 질병 관련 사항 그리고 기타 경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재했다. 호구조사 중 발견한 변동사항은 속히 호구조사부에 등재하고 정리해야 한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039호, 290면, 1916.1.24., '戶口調査規程'(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훈령갑제5호) 조선총독부관보 디지털컬렉션

민적실사는 「民籍法」(1909.3.4., 법률 제8호)과 「民籍法執行心得」(1909.3.20., 내부훈령 제39호)를 바탕으로 민적부를 편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서호철, 2007「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156~156쪽.

사법 및 형사요시찰인, 정신병자, 마약중독자, 룸펜, 보험가입자 등은 예방적 시찰 대상 범주에 속했다. 요시찰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대상을 등록·시찰하고 대상 해제되는 경우 삭제를 하는 등 일련의 프로세스로 관리했는데 타 종 사찰 범위권 인물도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했을 것으로 보인다.[56] 예방에 방점을 둔 경찰의 업무는 개인신상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정 인물의 신상과 행적을 검토하고 수배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물을 분류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기록을 조직해야 했다. 경찰은 무엇보다 인물의 변동사항을 추적하고 변동에 따른 인물 관리 방침을 적용해야 했기에 검색과 관리·활용에 유리한 카드 방식을 주로 채택하여 사용했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에서 각종 카드 자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요시찰인 사진을 수집하여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은 『동아일보』의 '휴지통'같은 지면에서 가십처럼 다루어졌다.[57] 1927년에 이르면 형사과는 다른 지역에서 수집한 것을 포함, 지문 수집을 거의 끝내고 카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임의사진카드는 오천이백수십 매, 씨명카드는 육만이천여명에 달하고 그 중 고등경찰에서 수집한 요주인물도 이천여명 포함되어 있다.[58] 지문 수집 완료 시점에 각종 카드기록이 재정비되고 있다는 점을

---

55) 과정에서 범죄 감행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했다. 저자는 임산부에 주의하여 영아 살해를 방지하고 보험가입자의 방화 살인 여지를 없애는 등 상당한 방범상 공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했다.
大西輝一, 1936 앞의 책, 58~59쪽.

56) 형사요시찰인은 강도, 절도, 방화 등 범죄 종으로 분류된다. 사법요시찰인은 가출옥자, 집행유예자, 집행정지자, 보석된 자, 기소중지자 등 사법결정에 따라 분류된다.
大西輝一, 1936 앞의 책, 58쪽. 62쪽~64쪽.

57) 인물카드에는 요시찰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요시찰인 카드'로 보기에 카드에 담긴 인물 범주가 상당히 넓고 일반 범죄자로 상당 포함되어 있다. 기사에 밝혀진 수량은 1,650장으로 1923년 9월에 촬영된 사진의 원판번호가 1591번임을 고려해 볼 때 인물카드와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수량 차이가 있다. 다만 인물카드 중 촬영 사진이 아닌 수집한 것을 복사한 사진이 붙어있는 경우 수배용이나 고등과 요시찰인 혹은 요주의인(要主意人)으로 표기되어 있다. 기사의 내용과 함께 고려하면 형사과에서 요시찰인 사진은 다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은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3년 2월 22일 휴지통.

확인할 수 있다.

형사과는 요시찰인카드, 사진카드, 씨명카드 등 신상관계 카드를 생산해 관리하는 한편, 범죄수법카드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표2-1]은 『조선신문』에 실렸던 범죄수법카드(手口カード)에 대한 일련의 기사이다.[59] 기사는 범죄수법카드가 수사상 효율성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표 2-1]『朝鮮新聞』에 실린 범죄수법카드 관련 기사

1927.3.26	경무국 수법카드와 기타 정비	경무국에서 각 도경찰부에 범죄수법카드 및 지문, 사진, 전과자 요시찰인 등의 카드 정비에 대해 시달. 그리고 감식 설비의 필요성 통감.
1927.9.10	지문이 없어도 수법으로 거둘 수 있다, 카드를 완성, 수색상에 일신면목	경기도에서 범죄수법카드 설비에 대한 준비조사를 시작. 경기도 관내 경찰서에 대해 1922년부터 1927년까지 각종 범죄 전부를 정밀하게 조사할 것을 명함.
1928.3.2	수법카드, 고생스럽게 실현	경기도 형사과에서 1928년도에 대대적인 시설개선진보를 계획하여 감식방면에 예산을 요구했다. 형사과 증원 등 신규계획은 삭제되고 수법카드 편성 준비조사에 착수함.
1931.1.8	수법카드, 형사과에 신설	경기도 형사과에서 1931년도부터 범죄수법카드계를 신설하여 내지의 다른카드를 참고하여 카드개시 준비를 하고 있다. 범죄 수법은 범죄 조사상 중대한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성되면 지문, 사진과 함께 범죄 수사상 한 신생면이 될 것이 기대가 됨.

58)『매일신보』1927년 5월 17일「指紋과 寫眞完備 경긔도에서」.

59)『조선신문』1927년 3월 6일「警務局が手口カードその他整備」;『조선신문』1927년 9월 10일「指紋は無くも手口で擧げる, カードを完成, 搜索上に一新面目」;『조선신문』1928년 3월 2일「手口カード, 辛ふじて實現」,『조선신문』1931년 1월 8일「手口カード刑事課で新設」.

기사는 또한 범죄수법카드 제작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확장 상황과 맞물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범죄수법카드는 감식 도구로 개발되었다. 범죄수법카드의 제작 논의와 함께 다시 한번 이전 수사기록들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이어 카드 제작을 위한 사전 연구조사와 축적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했는데 필연적으로 조직의 규모도 확장될 수밖에 없었다.

1931년 경기도 경찰부에서는 형사과 증축(增築)과 확장을 기획했다. 형사과는 과학 수사에 치중한 동경 경시청의 감식과를 모델로 삼았다. 확장은 지문실, 사진실, 형사이화학실 등을 갖춘 감식시설 신축을 포함했다. 확장과 함께 전 조선 경찰에서 생산한 지문과 사진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한곳으로 모이게 되었다. 형사과를 조선의 경찰 자료 본부로 만들려 한 것이다. 건물 신축 완료 시점에 형사과는 지문 25만 매, 사진 5만여 매를 보유하게 되었다.[60]

형사과는 지문과 사진 뿐 아니라 각종 감식·식별 도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추진해나갔다. 후에 형사과 과장 지위까지 오르게 되는 노무라 카오루(野村薫)는 1932년 『警務彙報』에 경찰지문과 범죄 수법에 대한 글을 두 달간 연재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형사과가 전 조선의 지문 본부가 된 일 년 후 경과 상황을 보고하고 지문원지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전 조선의 지문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만든 새로운 지문원지 양식에 범죄 수법과 인상 특징을 기재하는 칸을 만들고 성실히 기재하게끔 독려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정보로 수법소표(手口小票)와 특징소표(特徵小票)를 별도로 제작하려 했다. 소표의 목적은 각 경찰서에서 범죄를 조사하면서 형사과로 조회를 요청할 때 수월하게 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61] 범죄 수법과 마찬가

60) 『동아일보』 1931년 3월 12일 「京畿道刑事課擴張 科學搜査에 置重」; 『동아일보』 1931년 11월 25일 「蒐集한 指紋만 二十五萬餘枚」.

61) "...범죄 수법을 조사해서 그 수법에 부합하는 범죄인이 누구인지 아는 색인법(索引法)은 현 범죄수사학의 한 방법입니다. 오사카 경찰부 같은 곳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대대적으로 이 방법을 실행하고 있고 합당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경찰 지문원지에 범죄 수법란을 만든 것도 이 방법을 실행하여 경찰지문이 수사편의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범죄 발생시 수법 조회에 답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野村薫,

지로 인상특징을 수집하는 일도 긴요했다. 경찰은 지문과 사진 외 업무를 보완할 수사 도구를 더 필요로 했다.

한편 노무라 카오루는 인물카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소표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또는 관계자가 범인의 특징을 명확히 보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범죄인의 특징을 조사한 기록으로부터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피해자 진술을 통해 범인의 특징을 찾고 그 특징을 기초로 하여 형무소에서 조사하거나 형사과에 있는 사진소표에 의거 혹은 제 기억에서 범인을 찾아낸 사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명수기(指名手記)시에 경찰 지문의 특징 인상란을 사용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범인의 인상 특징을 수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규정에는 사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진을 첨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특징, 인상과 사진이 맞물린다면 더욱 조사상 효과가 있습니다. 장래에 특징을 수사에 이용하고, 인상(人相)을 수배에 이용하도록 애써주셨으면 합니다.[62]

'사진소표(寫眞小票)'는 인물카드의 당시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 이전부터 형사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피의자의 인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기록이라는 설명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진 중심 기록인 인물카드의 특성에 들어맞는다. 형사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은 별도로 형무소에서 확인해야 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인물카드에 부착된 형무소에서 촬영된 사진은 경찰이 수집해 온 것이고 카드는 경기도경찰부 내부 열람용으로만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부 열람이나 타 관서에 복사본이 제공되었는지 등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형사과는 각종 소표제작을 위해 지문원지에 인상특징과 범죄수법을 기재하게 했으나 사진 첨부는 필수사항이 아니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의 용도는 원지에 기입하게 되어있는 인상특징 항목과 맞추어보기 위한

1932 앞 글, 48~49쪽.

62) 野村薫, 1932 앞 글, 48쪽.

것이지 열람용이 아니었다. 형사과는 문자로 기술한 인상특징과 시각 정보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수배에 이용할 수사감식자료를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원지에 첨부한 사진은 추후 열람용으로 쓰일 수 있겠으나 일차적으로 연구자료용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수법과 인상특징도 감식 도구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경기도에 전선 각종 자료가 모이고, 조회업무가 늘어나면서 타 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할 기록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성도 생겼다. 요컨대 특징소표는 범죄자의 효율적 검거를 위해 중앙에서 통제한 동일하고 정확한 인상묘사를 배포할 목적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경찰부는 형사과를 확장하자마자 바로 1933년에 감식계 청사를 새로 건축하고 법의학(法醫學) 기사 등 인원을 보강할 계획을 세웠다. 지문이나 사진 등 수사자료만으로 완전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63] 형사과를 위시하여 경찰이 감식시설을 확충하고 효율적, 과학적인 수사를 지향한다고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상 범죄에만 치중하고 일반 형사정책은 등한시하여 범죄자 검거율이 낮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한다는 여론도 없지 않았다.[64] 1930년대에 들어 마리아 사건, 유아 단두사건 등의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 정책에 시선이 집중된 면도 있었다. 경무당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경기도 외 다른 도에도 형사과를 독립시키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65]

타도 경찰부 내부에서도 각 도 형사과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형사과는 경기도에만 유일했고 타 도의 경우 보안과에서 형사경찰 방면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범죄 발생 시 상황을 해결하는 것 외에 적은 인원으로 방범이나 예방,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연구는 전혀 할 수 없었다. 각 경찰서로부터의 자료 수집이나 수법 정리는

---

63) 『매일신보』 1933년 5월 31일 「犯罪搜査爲한 鑑識係新設 원선청사를 짓기로 하엿다 警察部의 새計劃」.

64) 『조선중앙일보』 1933년 5월 29일 「府內府外의 諸事件 犯人全部五里霧中, 嬰兒斷頭事件을 爲始하야 新堂里安岩里兩處强盜도 檢擧不能 警察當局 面目安在」; 『동아일보』 1933년 5월 30일 「思想的方面에만偏重 科學的技能은蔑如」.

65) 『조선중앙일보』 1933년 5월 25일 「刑事警察網完成 指赦完備와 檢擧督勵等等 保安課長會議의 討議」.

물론 시찰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요시찰인이나 요주의인, 전과자 시찰 업무에 무리가 생길 수 있었다. 아울러 경기도 형사과가 전 조선 중앙연락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자료를 보유한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가 수배에 대한 관할을 할 수는 있었으나 수사 지휘는 그보다 권위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수배와 지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연락이 용이해지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그만한 권위를 가지지 못했다.[66]

1930년대에 들어서도 일제는 간도공산당사건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상범 사건 및 적체된 사건처리, 과밀한 수용소 문제 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사법당국은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상범의 높은 재범율을 꼽았다.[67] 따라서 재범자에게 중형을 가해 장기수로 처분하거나 출옥자의 신변을 엄중히 경계해야 하지만 사상문제는 엄벌만으로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68] 사상범에 대한 유보처분(留保處分)이라는 대책도 고려되었는데 이에 대해 카사이(笠井) 법무국장은 "내용에서는 기소유예와 같으나 오직 기소유예를 급속히 결정치 않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 그 태도를 감시한 후에 결정코저하는 것이다. 복적은 사상의 전향과 유위(有爲)의 인물로 형여(刑餘)의 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찰측에서 구속 혹은 불구속자를 감시하거나 또는 부형으로 하여금 감시케 한다는 것으로 검사국보다도 경찰 측이 이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경찰 측 사무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경무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69] 일본에서는 1932년 중순경부터 이 안을 적용하여 양호한

---

66) 『警務彙報』 제366호, 1936년 10월 「刑事警察確立に對する私見」 山下政雄, 79~81쪽

67) 경무국의 조사에 따르면 1931년 일 년간 사상범죄관계로 징역하고 나온 사람이 974명에 달하는데 출옥 후 동정을 조사하니 사상운동에서 물러난 사람은 겨우 375명에 불과, 572명은 다시 사상운동에 들어섰다.
『동아일보』 1932년 10월 22일 「思想犯으로服役出獄者 六割은再次運動線에」.

68) 『동아일보』 1932년 10월 25일 「思想犯罪와 對策」; 『중앙일보』 1932년 12월 20일 「思想犯嚴罰主義에 對하야」.

69) 『매일신보』 1933년 3월 28일 「思想犯保留處分은 法務當局考究中 실시여하는 실례를 보와서 笠井法務局長 談」.

결과를 보았다고 하였는데,[70] 일단 기소를 유보함으로써 적체된 사건처리를 일시적으로 풀어낸 데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무국 사건처리에 과부하를 유발한 데에 사실상 경찰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누락된 수가 상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카드 5,674건 중 2,808건이 치안유지법 위반자일 정도로 치안유지법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던 법률이었다.[71]

[표 2-2] 치안유지법 검거사건 처분 통계(1925~1933)

	검거		검거 후 처분		처분 미결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건수 (건)	인원 (명)
1925	8	72	8	72	-	-
1926	43	321	43	321	-	-
1927	46	196	44	195	2	1
1928	195	751	195	751	-	-
1929	166	1,112	165	1,109	1	3
1930	321	1,884	321	1,884	-	-
1931	159	1,614	159	1,614	-	-
1932	299	3,873	290	3,747	9	126
1933	208	2,113	203	2,026	5	87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통계청 사이트 광복 이전 통계 '범죄검거사건 처분(1924~1933)'

비고 : 죄명에서 치안유지법을 선택하여 데이터를 추출함

[표 2-2] 는 경찰이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인원에 대한 통계이다.[72] 검거 인원수와 처분 인원수 차이가 크지 않거나 경찰이 검거한 대부분 인원이 처분과정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표 2-3]의 통계를 통해 1925년과 1933년 사이 전체 기결 사건 수 13,268건에서 기소가 된 사건 수 3,856건의 비율을 살펴보면 30%가 채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73] 경찰이 검사국으로 넘긴 인원 중 30%만 죄가 있다 판정한 것이다.

70) 『중앙일보』 1933년 4월 17일 「起訴留保處分案을 朝鮮에도 不遠適用, 思想犯方向轉換케 하는 案 當局이 具體案作成」.
71) 이애숙, 2014 앞의 논문, 23~24쪽.
72) 통계표 URL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tblId=DT_999N_002J1024&conn_path=I3
73) 장신, 1998 앞의 논문, 108~110쪽.

[표 2-3] 치안유지법 검거 조선인에 대한 검사 수사 사건 통계

사건처리별	1925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계
접수	88	279	1,417	1,352	2,132	1,782	4,456	2,052	13,558
전년이월	-	-	2	73	6	55	76	45	257
본년	88	279	1,415	1,279	2,126	1,727	4,380	2,007	13,301
기결	88	277	1,344	1,345	2,064	1,706	4,411	2,033	13,268
기소	26	135	494	447	553	651	1,011	539	3,856
예심청구	7	76	445	377	459	532	786	379	3,061
공판청구	-	59	49	70	94	119	225	160	776
약식명령 청구	33	-	-	-	-	-	-	-	33
불기소	-	136	703	765	1,452	1,005	2,899	1,455	8,415
죄가 안됨	18	-	1	17	24	3	78	14	137
범죄혐의가 없는 상태	-	53	356	412	422	513	1,036	543	3,335
공소권이 없는 상태	2	1	33	39	50	34	35	27	221
기소유예	35	1	60	52	71	149	1,108	665	2,141
기소중지	55	81	253	245	885	306	642	206	2,673
기타	-	-	-	-	-	-	-	39	39
이송	-	6	147	133	59	50	501	-	896
미결	-	2	73	7	68	76	45	19	290

출전 : 『朝鮮總督府統計年報』, 통계청 사이트 광복 이전 통계 '검사 수사 사건 인원(죄명별)' 74)

비고 : 조선인, 치안유지법으로 데이터 추출. 1926년 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이어 다음의 기사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검거를 비판하고 있다. 1929년 『동아일보』의 사설은 사상범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찰의 원칙 없는 검거를 비판하고 있다.

소화 2년(1927년)도 경찰의 검거상황을 보건데... 검거한 총 인원수가 24만이오 검사국에 송치된 인원은 약 9만이다... 재작년 경찰이 기소의견을 부치어 송국된 3만 2천 22인 중 기소된 자는 불과 1만 6천 여인이다. 또 한번 우리를 놀

74) 통계표 URL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999&tblId=DT_999N_297J2032&conn_path=I3

라게 하는 것은 송국된 인원이 기소되어 공판에 회부됨이 송국 수의 일할 오분 밖에 아니되는 사실이다. 검거된 인원의 반수는 경찰에서 석방되고 또 그 나머지 반수는 검사국에서 불기소되고 공판 또는 예심에 회부되는 것은 송국 인원 수의 일할 오분에 불과한 것은... 사법이 관대함이냐 경찰이 가혹함이냐. 7인의 유죄자를 검거하기 위하야 100인을 검거하는 무능과 가혹... [75]

기사에 따르면 경찰의 검거 인원에서 실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는 인원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사를 바탕으로 헤아렸을 때 경찰 검거 인원에서 검사국으로 송치한 인원 비율이 약 37%인 것에 비해 [표 2-2]에 따르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는 거의 100% 검사국으로 송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계와 기사는 경찰이 얼마나 사상 범죄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또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형사사건 증가 및 형사전과자 관리문제 역시 사회문제로 가파르게 떠올랐다. 일제는 1930년에는 1912년 제정 발포한 '형사시찰규정'에서 범위를 확대한 '형사요시찰인및전과자내찰규안(刑事要視察人及前科者內察規案)'을 제정, 일본과 공동으로 사찰하고 전과자 명부를 작성하여 도 사이 협조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려 했다.[76] 형사과는 높은 전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소재불명 형사요시찰인과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배소표(手配小票)라는 것도 고안해냈는데 이는 조선에만 적용하는 방식이었다.[77] 또한 일본에도 없는 법의형사이화학시험실(法醫刑事理化學試驗室)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와 협의하에 준공된 이후,[78] 경기도 형사과장은 경무국 촉탁으로 전 조선의 지문과 범죄자의 사진으로 카드를 만들어 매월 총독부 경무국에 보고하게 되었다.[79] 최신 설비와 과학

75)『동아일보』1929년 12월 6일「非科學的檢擧」.
76)『매일신보』1930년 5월 22일「刑事要視察人의 內察範圍를 擴張 경무국에서 내찰규정 작셩중 府令으로 近近發布」.
77)『警務彙報』제312호, 1932년 4월「手配小票制に就て」京畿道警察部指紋係, 90~91쪽.
78)『동아일보』1934년 10월 28일「朝鮮의 첫試驗 法醫警察을 實施」.
79)『매일신보』1934년 11월 22일「指紋과 寫眞을 中央에 蒐集 경무국 새로운 방침 한가지 犯罪 搜査에 拍車」;『동아일보』1934년 11월 23일「犯人의 指紋寫眞 總督府에서 統一」.

적 수사기술 도입이 범죄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지표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1930년대 말에 이를 때까지 범죄 증가에 대한 보도는 끊이질 않았고 다만 각종 계획과 수단이 상황 통제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80]

사상범에 대해서 1936년 치안유지법의 개정과 함께 일제는 엄벌주의 대신 새로운 관리방침을 도입하였고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이 시행되었다.

...보호관찰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에 부친 자의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가하는 점에 목적이 있다. 내지에서 기왕에 단순한 범죄방알하기 위한 단순한 경찰감시 등과 본질적으로 틀려 적극적으로 본인을 指導誘掖하여 국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얻게하고...

보호관찰의 대상은...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국한되어 있다... 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본 제도는 적용히 않는다.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 전부가 보호관찰에 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자 혹은 재판소에서 형의 집행유예언도를 받은자 또는 형무소에 수용을 당한 후 가출옥을 허한자 혹은 만기출옥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81]

보호관찰령 대상자는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 중 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 혹은 집행유예언도를 받거나 수감되었던 자에서 형 집행을 마치거나 가출옥 허가를 받은 자였다. 제도는 보호관찰소 내지는 보호관찰심사회라는 독립된 관청에서 시행했다. 사회 복귀로의 어려움이 재범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관청은 사상관계 형여자를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취직의 알선과 결혼의 중매까지 관여했다.[82]

사상범 선도에 목적이 있다고 하나, 대상자는 거주와 교우, 통신 등에서 제한을 받았다.[83] 가출옥 사상범의 경우도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에 통

80) 『매일신보』 1938년 7월 30일 「思想犯減少裡面에 盜犯은 增加의 趨勢 昨年末現在의 收刑者만 萬二千名突破 朝鮮犯罪相의 對遮的傾向」; 『동아일보』 1939년 2월 26일 「前科者洪水時代」.

81) 『매일신보』 1936년 12월 12일 「思想犯保護觀 察制度의梗概 一, 保護觀察의 目的」.

82) 『매일신보』 1937년 3월 7일 「就職紹介와 仲媒도 한다 保護觀察令의 適用者 今年엔 五百名程度, 최근출옥자와 집행유예자중심, 법무국의 조사진행」.

지해야 했다. 보호관찰소는 대상의 이동 및 가정관계, 직업유무, 생계상태, 행장(行狀), 사상의 추이 등을 인물 관할 지방법원 검사 및 형무소는 물론 경찰서에 통지해야 했다.[84] 보호소는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자임했으나 업무를 진행하는 전제로 인물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경찰에 전달해 결과적으로 경찰의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찰대로 기존에 진행해오던 일련의 시찰을 중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931년부터 1944년까지 사용된 인물카드 D양식에는 형무소

---

83) 思想犯保護觀察法 (昭化十一年, 法律第二十九號)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는 경우 또는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인을 보호관찰에 부친다.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가출옥을 허가받은 경우 역시 동일하다.

제2조 보호관찰에 있어 본인을 보호하고 더욱 죄를 짓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보호관찰은 본인을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부치거나 보호자에게 인도 또는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외 적당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한다.

제4조 보호관찰에 부쳐진 자에 대해서는 거주, 교우 또는 통신의 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한다.

『警務彙報』 제377호, 1937년 9월 「朝鮮思想犯保護觀察法規」 朝鮮總督府法務局, 22쪽.

84) 假出獄思想犯處遇規程 (昭化十二年, 總領第四十九號)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의 가출옥에 관해서는 본령에 정하는 것 외에는 일반(一般)의 예에 의거한다.

제2조 형무소장은 조선총독에게 가출옥을 보고한 때는 신속히 그 뜻을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가출옥이 허용된 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한 보호관찰에 회부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자를 제외하고 그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감독을 받는다.

출옥이 허가된 자가 보호관찰에 회부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때 보호관찰소는 신속히 그 취지를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본인은 지체없이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두하여 증표에 인장을 받을 것...

제9조 보호관찰소는 6개월마다 본인의 가정관계, 직업의 유무, 생계상태, 행장의 좋고 나쁨, 조건준수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검사 및 경찰서에 석방된 교도소에 통지할 것.

『警務彙報』 제377호, 1937년 9월 「朝鮮思想犯保護觀察法規」 朝鮮總督府法務局, 26쪽.

이동상황이나 날짜와 함께 기결이나 미결 같은 사항 (ミ, キ) 혹은 滿期, 假出獄, 執行猶豫, 刑執行停止, 保釋 등 사건처리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연필로 표기해 카드 생성 이후 시간차를 두고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는 경찰이 후속 관리 및 예방 조치에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보호관찰심사라는 것은 전향이 판별될 때까지 갱생을 앞세운 감시라고 할 수 있었다. 경찰은 경찰대로의 감시를 진행하여 대상자는 이중의 감시체계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제도에 이어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이 발포되는데 재범 우려가 현저한 자, 개선의 여지가 없고 전향을 거부한 자가 일단 사상범으로 분류되면 감시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85]

형사과는 지문, 사진 그리고 수법과 특징까지 경찰 자료의 범위를 확장하여 효율적, 과학적 수사를 도모했다. 방범 및 수사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기록을 수집, 관리했을 뿐 아니라 별도로 자료를 수사에 이용하기 위해 표준화, 유형화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기관이자 감식기관이었고 부가적으로 각종 자료와 기록을 관리・조직하고 제공하는 조선 내 중앙 경찰기록연구기관이라는 위상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감식 설비를 토대로 전국 수사기관 연락 중추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었지만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위까지 가지지는 못했다.

일제 경찰의 업무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범주도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을 포괄하였기에 모든 민중은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로 여겨졌다. 경찰은 호구조사를 통해 일반 민중에 대한 정보를 평소에도 축적하고 있었으며 범죄를 일으킨 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히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데 전력을 쏟았다. 사상범의 경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1930년대 들어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대상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의 가시

85) 『동아일보』 1940년 1월 8일 「朝鮮의思想不穩者相對로 豫防拘禁制度를 實施」; 『매일신보』 1941년 3월 7일 「思想犯 豫防 拘禁令 施行細則을 制定 明日 發布키로」.

거리 안에 인물을 두어 감시하려 했다. 카드를 이용한 인물 관리 방식은 분류와 검색에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찰은 인물카드를 비롯 요시찰인카드, 씨명카드, 수법카드 등을 만들어 사찰 업무 도구로 활용했다. 넓은 범위의 지문 수집, 각종 카드 형태의 기록과 명부는 감시와 통제업무의 기반이자 자신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중, 삼중의 기록 설계는 민중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시행하며 발생하는 초조함과 불안감, 의구심을 나타낸다. 기록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일제 경찰의 고유성을 반영하는 기관이자 일제 경찰의 정책기조를 구현하는 중심에 있었던 기관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제 3 절 해방 후 감시대상 인물카드의 활용

일제하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 수사와 사찰은 물론 자료 수집과 기록관리, 방범방책 연구, 통계, 감식 등 세부 업무가 형사과 관할 아래 있었다. 해방 후 형사과가 담당했던 업무는 여러 부서가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감식 및 과학 수사 관련 업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했다. 해방 후 감식 및 과학 수사 담당 기관 변천은 [표2-4]와 같다.[86]

[표 2-4] 해방 직후 감식 및 과학 수사 담당 기관 변천

1946	법무국 행형과 지문계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지문계 통합, 경찰부 수사국 감식과에 설치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法醫理化學室과 형사사진실 통합, 법의학실험소 설치
1948	경무부 수사국 감식과와 법의학실험소를 통합,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를 설치, 이화학계・법의학계・지문계를 둠
1955	대통령령(제1021호)에 의거 내무부 장관 소속하 國立科學搜査研究所 설치

경기도에서 담당하던 감식 업무는 중앙기관에 설치한 부서가 담당하게 되었다. 1955년에는 별도의 감식기구가 설치되었다. 치안국에서 독립한 국립과학연구소는 오직 감식 업무에만 종사하고 수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87]

사진을 부착한 카드 형태의 기록물로 요주 인물을 관리하는 체계는 해방 직후에도 이어졌다. 사찰이 여전히 비중이 큰 경찰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1950년대 후반에도 경찰이 카드 관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음은 다음 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

86)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3『韓國警察史』2, 내무부 치안국, 1138쪽.;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2『韓國警察史』1, 내무부 치안국, 969쪽.

87)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제' (대통령령 제1021호) 1955년 3월 25일 제정 및 공포.
第6條 研究所의 職員은 犯罪搜査에 從事하지 못하며 利害關係를 가진 事犯에 關하여는 鑑識을 할 수 없다.

괴뢰 간첩 김정제에 매수되어 간첩행위를 방조한 동대문경찰서 사찰계 형사 전(田), 최(崔), 이(李) 삼명을 "국가보안법 방조" 혐의로 구속중인 시경 사찰과에서는...동 수사진에서 탐문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십월 중순경 전기 삼명의 형사는 시내 명륜동 삼가 삼팔에 살던 "김"의 초대로 "김"을 찾아간 일이 있는데 이때 "김"은 삼명에게 현금 삼만환을 내주면서 동대문서 사찰계에 비치되어 있는 "요시찰인 카드" 중 자기의 "카드"를 버려달라고 청탁하였던 것이다. 현금 삼만원을 증여받은 형사들은 때마침 "요시찰인 카드" 경신 시기를 이용하여 "김"의 "카드"를 뽑아 없앴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김"은... 자기의 신분이 경찰의 감시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을 괴뢰집단에 보고하였다 한다.[88]

기사는 사찰계 형사들이 간첩에 매수당해 '요시찰인 카드'를 폐기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요시찰인 카드는 어느 시점마다 갱신되었는데 형사들은 그 시점에 맞춰 카드를 일부 폐기했다. 기사가 작성된 50년대 후반 인물카드는 활발히 생산되고 있었고 규칙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도 드러난다.

사찰과는 1946년 대대적인 '관구경찰청사무분장규정(管區警察廳事務分掌規程)'에 대한 1947년 개정에 의해 각 지역 경찰청에 설치가 되었다.[89] 내무부 치안국에서도 6.25 직후 수사와 사찰 업무를 단일화하였던 것을 사상범 및 범죄의 격증으로 1953년 '내무부직제개정'에 의거 수사과와 사찰과로 분리했다.[90] 해방 후에 이어진 첨예한 사상대결은 인물카드 제도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전시체제 이후 1955년 틀이 잡혀 1960년까지 유지된 경찰직제에 따라 중앙경찰기관인 치안국에서 '수사지도과'와 '특수정보과'가 각각 수사와 사찰을 담당했다. 형사과에서 담당하던 자료 수집·연구, 감식과 수사 업무는 수사지도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담당했던 고등경찰 업무는 사찰을 담당하는 특수정보과로 이어졌다. 각도 경찰국에는 '수사과'와 '사찰과'를 두었다.[91] 형사과가 담당하던 업무를 여러 부서가 담당하게 되

88) 『경향일보』 1957년 9월 4일 「間諜金正濟暗躍에 새搜査」.
89)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2 위의 책, 951~952쪽.
90)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3 위의 책, 598쪽.
91)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3 위의 책, 604~607쪽.

었을 뿐 경찰 업무의 큰 틀은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사찰 업무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찰이 일제 경찰이 이용하던 카드식 인물 관리 방식을 이어받은 흔적이 인물카드에도 남아있다. 기록물에는 1945년 이후 생산된 두 장의 카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2-3]은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던 해방 후 생산된 인물카드이다. 위의 카드는 박헌영의 것으로 양식이 없는 종이에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이름과 촬영 시점이 여백에 기재되어 있다. 카드가 언제 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진을 촬영한 시점은 해방 후 1946년이다. 아래의 카드는 일반 죄수의 카드이다. 사진은 1962년 서울 형무소에서 촬영했다. 촬영일 외에 다른 항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후면에 폐기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결국 폐기되지 않고 전해졌다.

[그림 2-3] 해방 후 생산된 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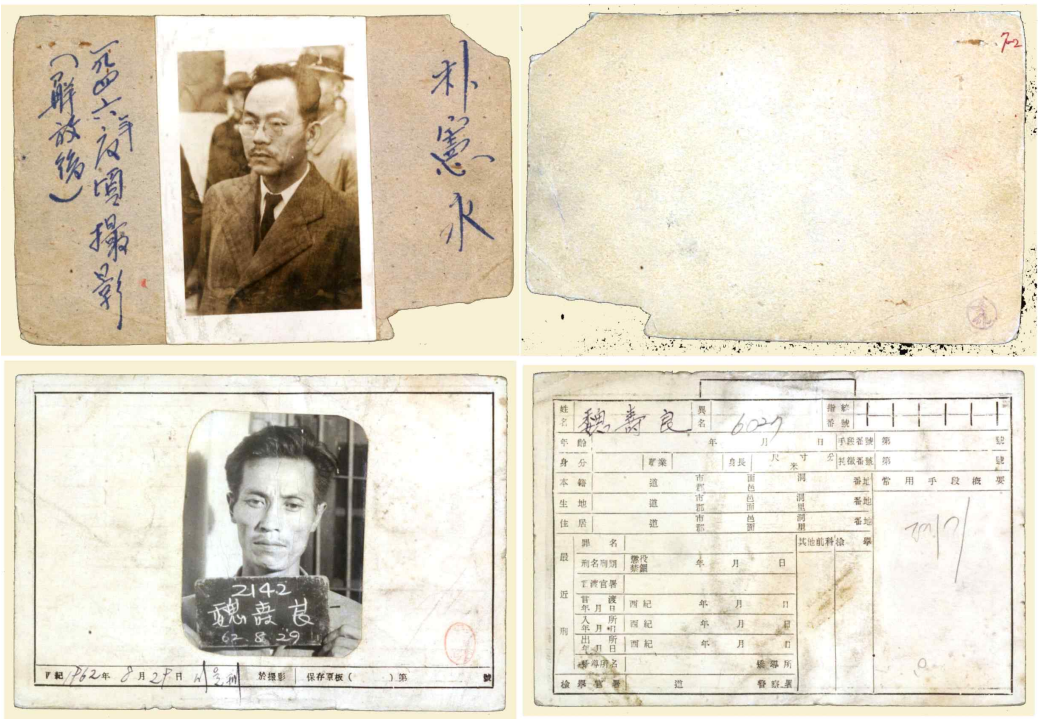

박헌영의 카드는 해방 후에도 경찰 업무에 인물카드 활용하는 방식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일반 죄수로 보이는 위수양의 카드는 한국경찰이 일제의 방법론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후자

의 경우 카드 양식이 년도 표기만 일본의 연호 대신 서기로 교체되었을 뿐 1931년부터 1944년까지 사용된 인물카드 D양식과 모든 항목이 동일하다. 위수양의 카드는 1962년도에 제작되었는데 적어도 경찰은 '피의자사진관리규정(被疑者寫眞管理規程)'이 공포된 1964년까지는 일제 인물카드와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92]

'피의자사진관리규정'은 피의자 사진 촬영 지침뿐 아니라 사진과 인물정보가 함께 실린 인물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피의자사진표'(이하 사진표)의 작성과 양식, 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규정은 일제가 생산한 인물카드의 활용·관리에 대한 통찰도 일부 제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 경찰이 단절 없이 인물카드를 업무에 이용해 온 것을 바탕으로 규정을 직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규정은 일제가 생산한 인물카드에 남아있는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다. 10개 조항로 구성된 '피의자사진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표2-5]와 같다.

[표 2-5] '피의자사진관리규정' 구성 및 내용

제1조 목적	▪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의자사진표(이하 사진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범죄수사에 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
제2조 사진의 촬영	▪ 사진생산기관은 경찰국·해양경찰서·경찰관서 ▪ 피의자 검거 혹은 인도받은 즉시 촬영 ▪ 원판은 명함판 ▪ 1매의 원판에 정면상(正面相)과 우측면상(右側面相)을 촬영함. 단, 특징이 있는 경우 좌측면상(左側面相)도 촬영
제3조 피의자사진표의 작성송부(送付)	▪ 촬영관서는 촬영 후 사진표를 작성하여 원판과 함께 경찰국에 송부해야 함 ▪ 사진표와 원판 송부시 '범죄수법규정'에 의거 수법원지(手法原紙)도 첨부해야 함

92) 대한민국 관보 제3633호, 69-71면, '被疑者寫眞管理規程' (내무부훈령제2호), 1964년 1월 11일 제정 및 공포, 대한민국 관보 디지털컬렉션.

제4조 사진표 등 관리에 관한 부책(簿冊)비치	▪ 경찰관서는 작성과 송부 경과를 기입한 부책을 비치해야 함
제5조 사진표의 보관	▪ 경찰국은 사진표를 송부받았을 때 수법명란(手法名欄)에 소분류별명(小分類別名)을 기입하고 성별과 소분류별에 의거 분류・배열함 ▪ 동일인에 대한 복수의 사진표가 있는 경우 비교하여 인상 및 특징이 좀 더 명확한 것을 보존함
제6조 원판의 보존	▪ 경찰국은 원판을 송부받았을 때 촬영관서별・촬영년도별・촬영번호순에 따라 보존함
제7조 사진소표의 작성정리 및 보관	▪ 경찰국은 송부받은 사진소표를 작성하고 규칙에 의거 배열・보관하여야 함
제8조 사진의 복사	▪ 경찰서는 지명수배 기타 범죄 수사상 필요할 경우 경찰국에 사진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 경찰국은 사진 복사 요구를 받았을 때 응하여야 함
제9조 사진의 열람	▪ 경찰서는 범죄 수사에 있어 피해자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사진을 열람시키도록 경찰국에 요구할 수 있음
제10조 사진표 등의 폐기	▪ 피작성자(被作成者)가 사망한 경우, 당해자가 70세 이상이 된 경우, 기타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사진표, 원판 또는 사진소표 삭제함

규정은 사진표의 목적을 '사찰' 같은 범죄예방 방책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 후 조치인 '수사'를 위한 도구로 제한하고 있다. [표2-6]은 인물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사진표 양식이다. 위수양 카드 양식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형 정보는 모두 삭제되었고 기본 신상정보 외 오로지 식별을 위한 정보, 즉 외모와 특징정보 중심으로 항목이 개편되었다. 8조에서 제시된 사진의 용도는 수배 및 검거 활동으로 한정되었다.

[표 2-6] ‘피의자사진표’ 전면과 후면

인상분류기준번호 (人相分類基準番號)	
(右) 측면상	정면상

성명	남여		수법명	主副		
이명			죄명			
본적			지문번호			
출생지			신장			
주소			語訛 (사투리)		안형 (顔型)	
생년월일			외견특징		부위	
작성년월일			비고			
작성관서						

시・도 단위를 관장하는 경찰국은 사진 및 사진을 부착한 ‘피의자사진표’를 기관 차원에서 생산하는 것은 물론 경찰관서에서 생산하여 송부한 원판 및 사진표를 통합적으로 관리했다.

경찰국은 수법명(手法名)을 기준으로 사진표를 분류하고 정리했다. 범죄수법 종류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범죄수법자료관리규정(犯罪手法資料管理規程)’[93]에 딸린 ‘범죄수법류별기준표(犯罪手法類別基準表)’를 참조할 수 있다. 일제 경찰이 이용했던 수법숙어를 연상시키는 범죄수법용어를 모아놓은 범죄수법류별기준표는 범죄를 종류별로 구분하고 아래로 두 단계 세분화했다.[94] 가장 하위에 있는 용어가 사진표의 분류

93) 대한민국 관보 제3646호, 52-78면, ‘犯罪手法資料管理規程’(내무부훈령제80호), 1964년 1월 27일 개정, 대한민국 관보 디지털컬렉션.

94) 일제가 고안한 수법숙어는 3장 3절에서 간단히 논하였다.
1964년 ‘범죄수법류별기준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강도(범죄)는 침입강도 / 비침입강도로 분류(대분류)된다. 침입강도는 잠전들기 / 잠타들기 / 들변치기 등으로 다시 분류

기준으로 삼는 '소분류별명'이다.

'범죄수법자료관리규정'과 '피의자사진관리규정'에 따라 경찰관서는 피의자를 검거하여 인치(引致)한 경우 '수법원지(手法原紙)'와 '피의자사진표'를 작성하여 경찰국에 송부해야 했다.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경찰이 작성하는 수법원지와 피의자사진표는 서로 상보 관계에 있으며 쌍으로 함께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록이었다. 인상 정보와 수법 정보를 통합 연계 관리함으로써 검거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다.

한편 경찰은 규정 5조에서 중복카드 삭제에 관한 부분과 7조 '사진소표의 작성정리 및 보관' 항목을 적용, 일제가 생산한 인물카드를 정리하려 했던 것 같다. 인물이 두 장의 카드를 가진 경우 많은 경우 그 중 한 장 여백에 중복삭제라는 메모가 있어 카드를 폐기하려 한 흔적이 있다. 사진소표용 색인번호는 거의 모든 일제 생산 인물카드에 남아있다. 관련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사진표의 보관 중) 동일인에 대하여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분류에 속한 사진표가 이미 보관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관 중의 사진표와 새로 송부된 것과 비교하여 인상 및 특징의 표현이 보다 명확한 것을 보존하고 다른 것은 삭제한다.

(이하생략)

제7조 (사진소표의 작성정리 및 보관 중) 경찰국은 송부받은 사진소표를 작성하고 다음 각명에 의하여 배열 보관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이명(異名)의 색인 번호순으로 보관하되 색인번호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가. 당해자(當該者)의 성명 중 성을 제외한 나머지 이름을 자음(子音)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숫자로서 표시한다.

(소분류)된다. 잠전들기는 낮이나 밤, 잠들기 전에 집안에 들어가서 돈과 물품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 잠타들기는 밤에 잠든 것을 확실히 알고 집안에 들어가서 돈과 물품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것, 돌변치기는 도둑질할 목적으로 집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의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강도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관보 제3646호, 58면, '犯罪手法資料管理規程' (내무부훈령제80호), 대한민국 관보 디지털 컬렉션

자음	ㄱ	ㅋ	ㄴ	ㄹ	ㄷ	ㅈ	ㅁ	ㅂ	ㅍ	ㅅ	ㅇ	ㅊ	ㅌ	ㅎ	보충 숫자
숫자	1		2		3		4	5		6	7	8		9	0

나. 대성(大姓)에 대하여는 먼저 성별로 분류하고 다시 색인 번호순에 의한다.

사진소표(寫眞小票)는 경찰국이 각 관서로부터 받은 원판과 사진표를 통제하기 위해 제작하는 별도의 색인용 기록이다. 사진소표에는 촬영관련 정보와 피의자 신상정보 일부를 기재한다. 사진소표는 색인번호순으로 보관한다. 색인번호는 위의 규칙에 의거해 만들고, 사진소표 성명란에 기재한다.

[그림 2-4] 변귀현의 인물카드

[그림 2-5] 안동원의 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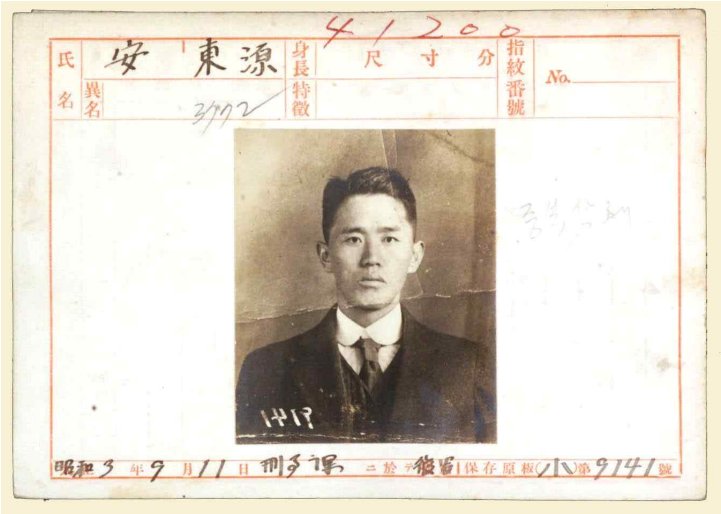

[그림2-4]는 4차 조선 공산당 사건 때 검거되었던 사회주의 운동가 변귀현의 카드이다. 변귀현은 상단의 형사과 생산 사진이 부착된 카드와 하단의 서대문형무소 생산 사진이 부착된 카드 두 장을 가지고 있다. 그 중 먼저 생산된 형사과 인물카드에 중복삭제라는 메모와 1092라는 숫자 기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자리 숫자는 1962년 규정에 따라 사진소표 성명란에 기입하는 색인번호이다. 숫자는 사진소표 색인번호 생산 규칙에 의거 성명의 자음이 각각 지시하는 ㄱ(1)+없음(0)+ㅎ(9)+ㄴ(2)의 조합이다. 상당수 인물카드에는 중복삭제 메모가 4자리 숫자와 함께 연필로 기입되어 있다. 숫자와 메모는 보통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은 시기에 기입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숫자는 거의 대부분 인물카드에 기재되어 있다. 한 인물에 대해 두 건 이상의 카드가 남아있는 경우 단 한 건의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에 이런 식의 중복 혹은 중복삭제라는 메모를 찾아 볼 수 있다.[95] 복사한 사진으로 제작한 [그림 2-5]

95) 예를 들어 경성제대 반제동맹사건으로 수감되었던 신현중은 일상복을 입고 있는 수집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 3건과 (그 중 2건은 같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다) 서대문형무소, 본정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 2건까지 총 5건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그 중 3건의 사진에 중복 삭제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중복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두 건의 카드 중 한 건에는 삭제 메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카드의 경우 경기도 형사과가 아닌 다른 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안동원의 카드에도 중복삭제 메모와 함께 4자리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색인번호 생산규칙에 따른 ㄷ(3)+ㅇ(7)+ㅇ(7)+ㄴ(2)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숫자이다.

규정은 이 외에 '인상유별기준표(人相類別基準表)'를 포함하고 있다. 기준표는 크게 5개의 항목으로 피의자의 신상과 외형특징을 유형화하여 분류한 것이다. 인상은 외견특징, 연령별, 체격, 語訛(말투, 사투리), 안형(顔型) 5종으로 구분한다. 각 종은 다시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각각에 대응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예를 들어 외견특징은 1. 절름바리 2. 맹인 3. 片目 4. 耳病身... 등 48개 유형으로 분류한다.[96] 기준표에 의해 조합한 숫자를 사진표와 사진소표에 있는 '인상류별기준번호'칸에 기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정은 일본 경찰이 세운 인물카드 체계를 한국 경찰이 이어가고 있는 정황을 보여준다. 사진표는 용도가 축소된 부분은 있으나 일차로 인물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검색과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기록이라는 점이 인물카드와 동일하다. 특히 수법과 특징을 사진기록과 연계해 관리하려 한 부분은 해방 후 규정 제정까지 20여 년의 기간 차를 생각하면 기본 틀은 동일하되 세부 발전만 약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97] 한국 경찰이 해방 후 생산한 두 장의 카드와 규정 이후 생산되었을 카드는 일제가 생산한 인물카드와 동일한 기능과 구조상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같은 계통의 기록물로 간주할 수 있다.

카드에 남아있는 연필로 작성된 숫자와 삭제지시 메모는 피의자사진관리규정이 제정된 1964년 이후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카드에 남은 흔적은 한국 경찰이 인물카드를 정리하려고 했던 정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삭제라고 기재된 카드가 상당수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점에 실제 어느 정도 수량이 폐기되었는지 알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한 1980년대까지 치안국과 치안본부는 인물카드를 약 40여 년간 보관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관리도 했다. 치안본부가 인물카드를 공개한 당시 정황은 다음 1982년 기사에서 일부 드러나 있

96) 대한민국 관보 제3633호, 70면, '人相類別基準表', 대한민국 관보 디지털컬렉션.
97) 일본 경찰이 수법과 특징을 표준화하는 과정은 3장에서 다루었다.

다.

정부는 거족적인 독립기념관건립운동과 때를 맞춰 관련 기관별로 기념관에 전시할 독립운동자료를 발굴하기로 했다...치안본부... ①일제 경찰이 36년 동안 작성한 독립운동가들의 전과기록카드를 모두 수집 정리 사료로 제공키로 했다. 경찰은 구속자의 사진 등 전과기록은 형이 만료된 후 10년 간만 보관토록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독립운동가들의 전과기록은 독립운동사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 일괄 정리하여 일반에게도 공개, 독립유공자의 소명자료로 제공하고...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들의 전과기록카드는 일반잡범들의 것과 함께 섞여 ②치안본부 감식과, 수사2과 수법반, 일선 경찰서 등에 흩어져 있었다... 지금까지 확인 된 것은 ③1만 5천 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④윤봉길, 이봉창, 오세창, 이갑성, 유관순 등 중요인사 5천 여명의 것은 흑백사진 (앞면, 옆면)도 함께 붙어 있다...[98]

①, ④번 내용에서 형태나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 인물로 미루어 기사에서 지시하고 있는 기록은 인물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인물카드는 본래 독립기념관으로 이관될 예정이었으나 모종의 이유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인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열람하고 있는 인물카드는 ②치안본부 감식과와 수사2과 수법반, 일선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의 혼합이다. 인물카드 관리를 담당했던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가 감식 업무로 기관을 불려나갔고 과학적 수사본부로 거듭나려 했던 것을 돌이켜본다면, 감식과와 수법반에서 인물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 경찰부 직제의 큰 틀이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어 80년대까지 이어져 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도 경찰부가 있던 경기도청 건물은 해방 후에도 그대로 경기도청으로 이용되었다. 1967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 후 내무부 치안국이 경기도청 건물을 사용한 바 있기에 경기도청에 남아있던 경찰기록이 치안본부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드러난 사실 중 의아한 부분은 ③번이다. 현재 남아 있는 카드

98)『동아일보』1982년 9월 11일「政府 抗日運動자료 발굴작업」.

의 수량은 총 6,264매로 기사에서 제시한 1만 5천 여건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치안본부에서 기록을 전달할 때 누락한 기록이 있다는 의미인지, 누락을 했다면 어떤 이유에서 누락을 한 것인지 단순 오보인지 알 길이 없다. 치안본부와 치안국은 일제 경찰기관이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기간 만큼이나 긴 기간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한국 경찰기관의 일제생산 인물카드 관리와 이관 상황에 대한 정보는 기록의 다면성과 층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이다. 현재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

[그림 2-6] 인물카드 이용자 열람 화면

현재 인물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제공하고 있다. 인물카드는 [그림2-6]의 형태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인물별로 카드의 전면과 후면을 열람할 수 있다. 인물이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같은 페이지에서 선택해서 볼 수 있다. 초서(草書)나 아무렇게 마구 쓴 기재사항과 메모를 전부 읽기 쉽도록 정서로 바꾸어 제공하고 있으며 원본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검색은 이름, 카드번호, 지역, 출생연도로 가능하다.

인물카드의 이용 가능성은 일차로 사진에서 발생한다. 담겨있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긴 하지만 별도의 경찰기록이나 사법기록과 연결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도 기록의 이용 가능성을 높인다.

[그림 2-7] 박용기의 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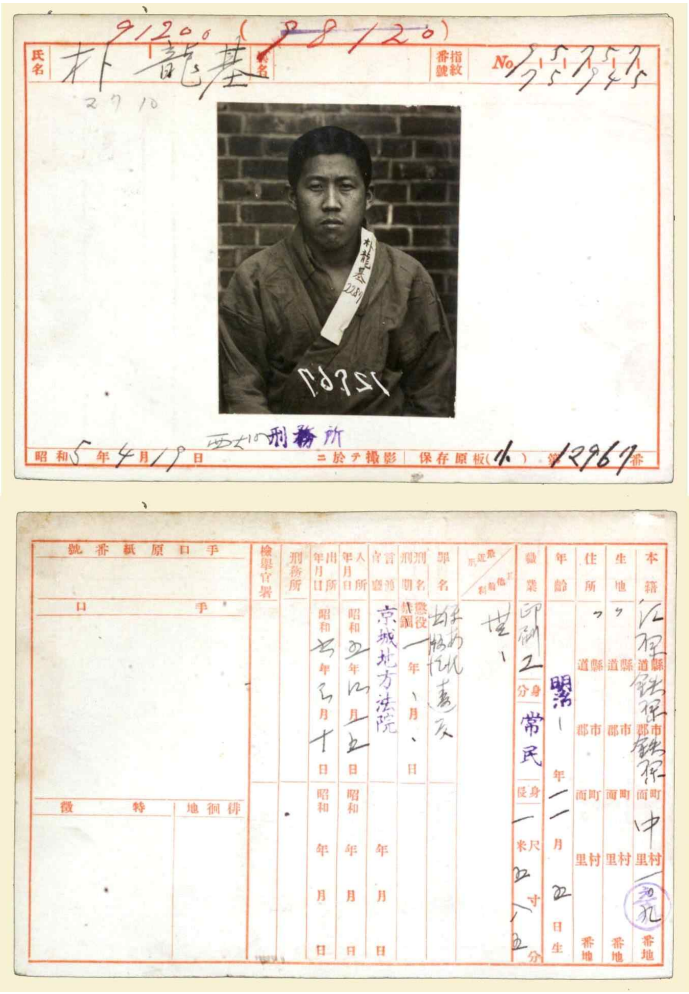

국사편찬위원회는 1985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관받은 경성지방법원 문서 중 형사사건신문・재판기록 해제집을 2006년에 출간했다.[99] 표지에 인물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어 해제집에 인물카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2-7] 박용기의 인물카드를 먼저 살펴보자. 인물카드가 담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박용기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으로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930년 4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 입소했다. 사진은 입소 4일 후인 4월 19일에 촬영했다. 박용기의 직업은 인쇄공이다.

이제 소송 기록을 살펴보면 박용기가 사진을 촬영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박용기는 1930년 광주학생운동에 동조해 동맹휴교를 선도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1930년 1월 27일 오전 4시 철원경찰서 순사 金麟植은 관내 순찰 중 불온한 전단을 발견했다. 「불온문서 살포에 관한 건」에 전단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전단은 日帝와 전민족적 혈전을 촉구하는 문구와 내용이 중복되는 2종과 '학생제군'으로 시작하는 1종, 슬로건을 담은 1종 등 모두 4종이었다. 모두 광주학생운동과 관련된 선전문이었다. 경찰은 등사기를 조사해 철원청년동맹 소유 등사판 1대를 보존하고 있던 박용기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그는 철원청년동맹원이자 花田勞動夜學院 교사였다. 이에 화전노동야학원 교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김순만, 유광희가 공모자로 검거되었다."[100] 경찰은 유광희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하고 박용기와 김순만을 기소하여 철원지청에 송국하였다. 기소된 2인은 철원지청에서 신문을 받았고 2월 13일 철원지청은 사건을 경성지법 검사국으로 송치하였다. 검사국에서는 피의자를 신문한 후 17일 공판을 청구했다. 1930년 4월 19일 박용기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01]

---

99) 국사편찬위원회 2009, 『일제강점기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 해제』, 국사편찬위원회

100) 경찰의 수사보고서와 의견서, 피의자 신문조서, 공판청구서, 공판조서 등으로 구성된 소송 기록을 해제한 내용이다.

국사편찬위원회 2009, 위의 책, 7쪽 인용.

101) 국사편찬위원회 2009, 위의 책, 7~8쪽.

기록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검토했을 때 공모자로 지목된 김순만의 인물카드도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8] 첫 번째 카드에 부착된 김순만의 사진 촬영일은 박용기의 사진 촬영일과 같은 날이어서 인물카드 속 김순만은 소송기록의 김순만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김순만은 1935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종로서에 검거되었다. 김순만은 종로서에서 촬영한 사진과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각각 부착한 인물카드 2장을 더 가지고 있다. 위의 사건 이후에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8] 김순만의 인물카드 3종

현재 이용자는 특정 범주 안의 인물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인물카드에 접근할 수 있다. 박용기, 김순만의 인물카드와 공판기록을 연결한 예처럼 인물카드에 별도의 기록을 연결하여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면 이용자는 사진 속 인물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얻게 된다. 인물이 살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생산된 사진인지 정보를 습득한 이상 이용자에게 인물의 표정과 인상은 시각 정보 이상의 감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당시 관리 도구로만 쓰였던 사진이 인물이 겪고 있는 상황과 경험을 환기시키는 도구로 변모하는 것이다.

한국 경찰이 일제가 고안한 인물카드 체계를 계속 이용했음은 물론 형태와 구조가 유사한 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업무에 활용했음은 명백하다. 기록물의 목적을 수사용으로 한정하긴 했으나 한국 경찰의 인물카드는 기능적으로 일제가 고안한 인물카드와 같은 계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80년대에 경찰이 역사기록관리기관에 인물카드를 이관하는 과정에 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만큼이나 장기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이 기록물을 어떻게 보관·관리하였고 어떤 위상을 부여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그러나 한국 경찰은 일제 생산 카드를 관리하면서 흔적을 남겼다. 현용기록 규정을 적용해 관리하려고 한 흔적을 통해 경찰이 인물카드를 역사적 기록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짐작할 수 있었다.

현재 인물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사진을 포함한 기록이라는 인물카드의 특성을 살리고 이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물의 서사를 받쳐줄 수 있는 별도 기록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인물카드가 색인 역할을 할만한 공개되지 않은 기록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경찰이 생산한 취조기록, 진술기록이나 공판기록 등을 연결해 인물카드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면 기관과 대상의 역학과 사회지형을 드러내어 이용자는 기록물을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인물카드 양식의 변화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항목 구성에 따라 4가지 양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애숙은 편의상 양식을 A부터 D까지로 구분했고, 본고도 이 구분방식을 준용했다.

사진과 카드 생산은 비슷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 확보해 놓은 사진으로 나중에 카드를 제작한 경우도 더러 있다. 사진 생산 시점과 별도로 양식 변환 시점과 수량이 몰려있는 기간을 중심으로 각 양식이 주로 생산·활용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A양식은 1919년부터 1922년, B양식은 1923년부터 1930년, C양식은 1929년부터 1931년까지이다. D양식은 현재 1931년부터 1944년까지 생산된 카드가 남아있으나 1945년까지 생산·활용되었을 것이다. 각 카드 양식 사용 기간과 현재 남아있는 카드의 수량을 함께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102)]

[표 3-1] 인물카드 양식별 사용기간과 수량

양식	사용기간	수량
A	1919~1922	1,055
B	1923~1930	379
C	1929~1931	605
D	1931~1944	4,224

일본 경찰은 각종 경찰 자료 특히 인물정보를 카드(소표) 형태로 집적시켜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프랑스의 경찰체계를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인물카드에 부착한 사진은 19세기 프랑스 경찰 알폰소 베르티옹(Alphonse Bertillon)이 고안한 범죄자 초상사진 촬영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사진과 인물정보를 함께 열람할 수 있는 기록 형태도 베르티옹 카드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베르티옹은 방대한 양의 사진카드를 통

102) 카드의 크기와 유형별 남아있는 수량은 이애숙이 논문에서 밝힌 내용을 참조했다. 카드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0cm이다.
이애숙, 2014 앞의 논문, 1쪽, 20쪽.

제, 검색, 이용하기 위한 사진카드관리 체계도 만들었다.

베르티옹 시스템은 근대 범죄 인식 체계를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스템은 개인별 기록이라는 미시적 체계와 거시적 집합 체계로 구성되었다. 개인은 카드 한 장에 종합·요약되었고 카드는 통합적이고 통계적인 파일 시스템으로 분류되고 조직되었다. 그가 조직한 범죄인 아카이브는 경찰 업무를 은유하고 있으며, 사회 일탈 현상을 관리하려는 실증적 시도 가운데서 중요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베르티옹 시스템은 프랑스 외부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경찰의 국제화, 표준화에 기여했다.[103] 일제의 인물카드 역시 베르티옹 시스템 영향 아래 있다고 본다.

원 질서의 파괴로 인물카드가 본래 어떻게 분류되고 정리되었는지, 관리체계나 카드 간의 위계 등 구조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카드에 인쇄된 양식 항목을 통해 색인 기능을 했을 법한 정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각 양식은 크게 사진과 사진 생산 관련 항목, 사진이 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정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식 개정에 따른 항목 변화는 경찰 업무의 방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 요컨대 일제는 범죄자 단속에 이용할 지식체계를 만들어 내는데 힘썼다. 외형적 '특성'과 '범죄수법'에 대한 정보를 수집, 연구로 유형화시켜 식별 및 감식 도구로 만들어 경찰업무에 이용하려 했다. 그 시도가 인물카드 항목에 일부 드러나 있다.

사진은 인물카드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자 정보이다. 부실하게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진은 반드시 부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진은 사진 내용을 설명하는 글, 캡션 없이 이용에 한계를 가진다. 인물카드는 태생적으로 사진과 사진 속 인물을 설명하는 정보인 캡션이 짝을 이루고 있다. 인물카드는 사진이 새로운 기록 도구로 도입된 후 사람을 관리하는 도구로서의 쓰임새 및 효용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1절에서는 수형 정보 중심의 초기 카드 형태를 보여주는 A양식을 2절에서는 수사 자료기능이 강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과도기 양식인

103) Alan Sekula,「몸과 아카이브」『의미의 경쟁』, 김우룡 역, 눈빛, 2001, 402~409쪽.

B, C양식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이전 양식 사용을 통해 집적된 정보들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담기 위해 설계된 D양식을 분석했다. 한편 D양식은 해방 이후 생산된 카드가 양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결과적으로 인물 카드의 지향점이 어느 수준까지 구현된 최종양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1 절 수형 정보 중심 초기 양식

A양식은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사용되었고 인물카드의 기본 형태를 보여준다. 모든 양식 중 유일하게 사진 촬영 일자를 기입하는 칸이 없다. 그러나 간혹 촬영일이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형을 선고받은 날(言渡年月日)로 미루어 사진을 촬영한 날짜를 짐작할 수 있다.

[표3-2] A 양식 카드 전면과 후면

<table>
<tr><td>이름 (氏名)</td><td>연령 (年齒)</td><td>年　月　日生</td><td>지문번호 (指紋番號)</td></tr>
<tr><td></td><td>신장 (身長)</td><td>尺　寸　分</td><td rowspan="2">No ----------</td></tr>
<tr><td></td><td>특징 (特徵)</td><td></td></tr>
<tr><td colspan="4">사진</td></tr>
</table>

<table>
<tr><td colspan="2">본적 (本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출생지 (出生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소 (住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신분 (身分)</td><td></td><td>직업 (職業)</td><td></td></tr>
<tr><td rowspan="8">수형사항
(受刑事項)</td><td colspan="2">죄명 (罪名)</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형명 (刑名)
형기 (刑期)</td><td colspan="2">禁錮　懲役
年　月</td></tr>
<tr><td colspan="2">언도년월일 (言渡年月日)</td><td colspan="2">大正　年　月　日</td></tr>
<tr><td colspan="2">형기시작 (刑ノ始期)</td><td colspan="2">大正　年　月　日</td></tr>
<tr><td colspan="2">언도재판소 (言渡裁判所)</td><td colspan="2">法院</td></tr>
<tr><td colspan="2">집행감옥 (執行監獄)</td><td colspan="2">監獄</td></tr>
<tr><td colspan="2">출옥년월일과
사유 (出獄年月日及其事由)</td><td colspan="2">大正　年　月　日
滿期　假出獄</td></tr>
<tr><td colspan="2">전과 (前科)</td><td>犯</td><td>비고 (備考)</td><td></td></tr>
</table>

[표3-2] 카드의 전면과 후면을 살펴보면 전면에는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공란과 기초 신상정보인 이름과 연령, 인물의 외형과 관련된 정보인 신장과 특징 마지막으로 별도 자료에 대한 색인 역할도 할 수 있는 지문번호 항목이 있다. 후면에는 본적, 출생지, 주소, 신분, 직업 같은 신상정보와 죄명, 형명, 형기, 언도년월일, 집행감옥 등의 수형사항 항목이 있다.[104]

[그림 3-1] 이일영의 인물카드 (A양식)

신상정보와 수형정보로 이루어진 항목 구성과 입소년월일을 분석하여

104) A, B, C 인물카드 후면양식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세로형식을 가로형식으로 바꾸어 옮겼다.
이애숙, 2014 앞의 논문, 1쪽.

카드가 생산된 시기를 유추했을 때 인물카드는 1919년 3.1운동 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형자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105] 그러나 A 양식 카드에는 3.1 운동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도 세 장이 포함되어 있다.[106] 가장 오래된 것은 이일영(李一榮), 이정로(李鼎魯)의 사진이 부착된 카드이다. [그림 3-1] 이일영의 카드를 살펴보면 전면 여백에 '대정(大正) 2월 6일 촬영'이라 기재되어 있어 1913년에 촬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피의자 관리에 인물카드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이전부터 사진을 관리 도구로 생산 및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면 비고란에는 독립의군 참가자(獨立義軍參加者)라 기재되어 있어 검거 사유를 알 수 있다.

사진을 촬영, 생산한 기관은 크게 두 곳이다. 1923년 서대문형무소로 명칭이 변경되는 서대문 감옥과 경성 감옥이다. 서대문 감옥에서 생산된 사진은 대부분 원판번호가 사진 혹은 카드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경성 감옥에서 생산한 사진의 경우 원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복사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와 본정(本町)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가 한 장 있다. 수형 기관에서 생산한 사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수형 기관 내지는 사법부에서 인물카드를 제작・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초기 인물카드 제작 기관에 대해서는 2장 1절에서 이미 자세히 논하였다.

인물카드 전체를 보았을 때 원판(原板)은 두 가지 의미로 혼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사전적인 의미로 현상하기 전의 원본인 음화(陰畫, negative print), 다른 하나는 음화를 현상한 사본(寫本)인 수집해온 사진을 원판으로 간주하는 경우이다. 인물카드에는 촬영한 사진 또는 복사한 사진을 부착했다. 사진을 '복사'한다는 것은 원판이 없는 경우 수집해온 인화한 사진을 촬영하여 새로운 원판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인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107] 따라서 수집해온 인화 사진을 복사하

105) 언도년월일 또는 입소년월일 연도를 분석한 결과 1919년은 625장, 1920년은 146장으로 A 양식 카드는 1919년과 1920년 사이 대부분 생산되었다.
박경목, 2018 앞의 논문, 206~207쪽

106) 김욱제 ia_1145, 이일영 ia_4160, 이정로 ia_4215

여 카드를 만들었을 경우 수집해온 인화 사진이 원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생긴 음화는 원판에 대한 복제본이라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진을 복사하는 경우 촬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2종의 결과물이 생긴다. 수집해온 원판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생기는 음화와 음화를 인화한 결과물인 사진이다.

1935년 서대문형무소에 시달된 재소자 사진 촬영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원판관리에 대한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108] 또한 원판 소재(所在)에 대한 메모가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규정이 시달되기 이전부터 형무소에서 나름 음화원판을 관리해왔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B양식부터는 사진 촬영 기관이 형무소에서 경찰 기관으로 확대되는데 형무소에서 원판을 복제하여 별도로 경찰에 제공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운영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A양식에 부착된 형무소 촬영 사진의 경우 형무소에서 음화원판을 관리했을 것이고 B양식 이후 형무소 촬영 사진의 경우 경찰이 수집해 온 사본 사진에 원판번호를 매겨 원판으로 간주하고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대문형무소예규 '사진촬영및취급수속(寫眞撮影及取扱手續)'은 사진 촬영과 보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촬영 대상과 보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재소자의 사진은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촬영한다.

1. 기소된 자
2. 확정입소자
3.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촬영이 필요하면 제1호 양식 사진촬영자서류부에 등재하고 소장의 결

---

107) 『매일신보』 1928년 8월 8일 「原板寫眞 複寫法 로광을 잘할 것」, 『마산일보』 1961년 1월 26일 「카메라의 豫備知識 撮影方法과 選擇 등」;

108) 제7조 사진 원판에는 [소화 년 월 일 / 촬영번호] 도장이 압날(押捺)된 지편(紙片)을 붙이고 일 년마다 일정한 함에 넣어서 보존한다.
西大門刑務所職員交友會 編, 1939 『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 '在所者寫眞撮影及取扱手續' (達示 제28호, 1935.6.10.), 74쪽.

재를 받는다. 서류부 원본은 사진의 색인으로 겸용하고 영구보존한다.

제4조 재입소하는 자의 사진은 전 재소(在所)중 촬영한 것으로 하고 얼굴의 생김새에 달라진 것이 있는 경우는 촬영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유년수(幼年囚) 및 장기수는 촬영 후 유년수는 3년, 장기수는 5년이 될 때마다 또 재소 중 부상 기타 다른 특징에 이동(異動)이 생긴 때는 즉시 그것을 촬영한다.[109]

형무소에서는 재소자만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을 하였다. 사진에 대한 색인으로 이용하는 '사진촬영자서류부(寫眞撮影者書留簿)'는 촬영과 촬영 대상에 대한 기본 정보를 기입한다. 항목은 서무계 주임, 담당자, 촬영년월일, 촬영번호, 기소일 혹은 입소년월일, 죄명, 형명, 형기, 칭호번호, 씨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장의 결제를 받아야 했다. 제4조, 제5조는 시간의 흐름이나 그 외의 사건으로 수감자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인물을 다시 촬영하여 정보를 갱신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구형무소 역시 '재소자사진촬영규정(在所者寫眞撮影規程)'에 의거 사진을 촬영하고 관리했는데 규정은 서대문형무소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촬영 대상과 촬영 방식에 대해 보다 자세한 지침을 담고 있다.

제1조 기재된 재소자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

1. 형기 2년 이상의 징역수 및 금고인
2. 감(監) 외(外) 작업을 나가는 수형자
3. 전 2항 외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소자

(이하생략)

제4조 사진은 상반신 정면상, 흉부의 칭호번호(稱號番號)와 씨명문자를 명료하게 한다. 단 특정 부위 촬영을 요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신 및 좌우 측면을 촬영한다.[110]

---

109) 西大門刑務所職員交友會 編, 1939『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在所者寫眞撮影及取扱手續'(達示 제28호, 1935.6.10.), 74쪽.

110) 大邱刑務所 編, 1932『大邱刑務所例規』'在所者寫眞撮影規程' (1927.5.1., 達示제3호), 23쪽.

수감자의 대부분 사진 촬영을 실시하는 서대문형무소와 달리 대구형무소는 형기 2년 이상의 징역수에 대해서만 사진을 촬영했다. 2년이라는 기간은 대상의 재범 가능성 및 관리상 가용범위를 고려하고 설정했을 것이다.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수형자의 경우 모종의 상황을 대비해 촬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는 사진 촬영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림 3-2] 이계엽의 인물카드 전면 (D양식)

[그림 3-2]는 D양식에 대구형무소에서 생산한 사진을 부착한 이계엽의 인물카드이다. 사진은 1919년 촬영되었으나 카드로 제작된 것은 D양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1931년 이후이다. 인물카드 전체를 검토해보았을 때 측면 전신을 촬영한 사진은 대구형무소에서 생산된 것이 유일하다. 일부는 규정이 생기기 이전 촬영된 것이라 이전부터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방식으로 촬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 감옥과 경성 감옥은 각자 원판 관리를 했고 사진 촬영 방식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림 3-3] 김선명의 인물카드처럼 서대문 감옥은 정면 상반신과 측면 상반신 각 한 장씩 촬영했다. 한편 경성감옥은 [그림 3-4] 김후식의 인물카드처럼 상반신 한 장을 촬영했다. 그리고 '원판은 경성감옥에 보존'이라고 카드 여백에 기재했다. 양측 모두 인물들은 자신의 이름과 수인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기재된 띠를 부착하고 있다.

[그림 3-3] 김선명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그림 3-4] 김후식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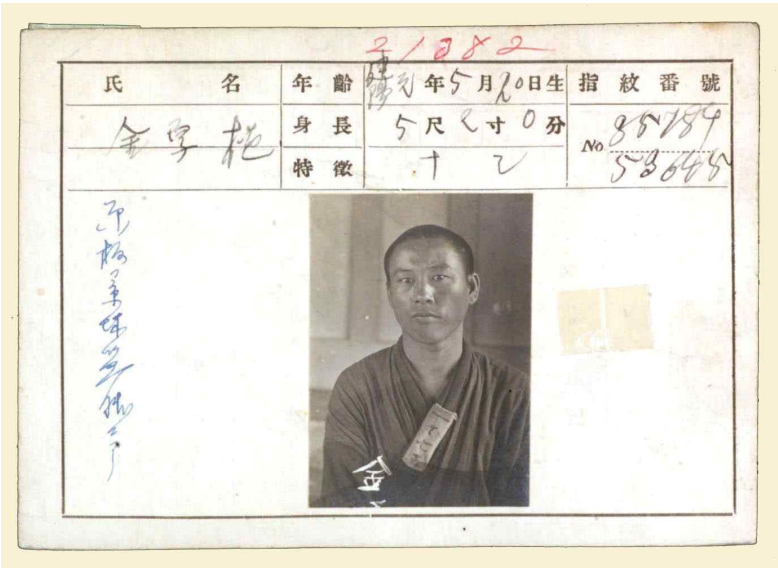

인물을 단독으로 촬영한 것처럼 보이는 사진은 많지 않다. 특히 1919년에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을 수감시켜야 했기 때문에 단체로 사진을 촬영하고 인물별로 잘라내는 방식이 부득이하면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그림3-5] 김선두의 인물카드처럼 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의 경우 수감자를 일렬로 세워 촬영한 후 인물별로 사진을 잘라서 쓴 흔

적이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프레임(frame)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걸려 있을 경우 그 부분만 성의 없이 잘라내는 등 인물의 인상만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사진을 다루고 있다. 카드에 아무렇게나 메모한 흔적들 뿐 아니라 사진을 다루는 방식도 카드가 애초에 오랜 기간 보존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실무자들이 수시로 열람하고 수시로 정보를 갱신하며 실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산한 기록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3-5] 김선두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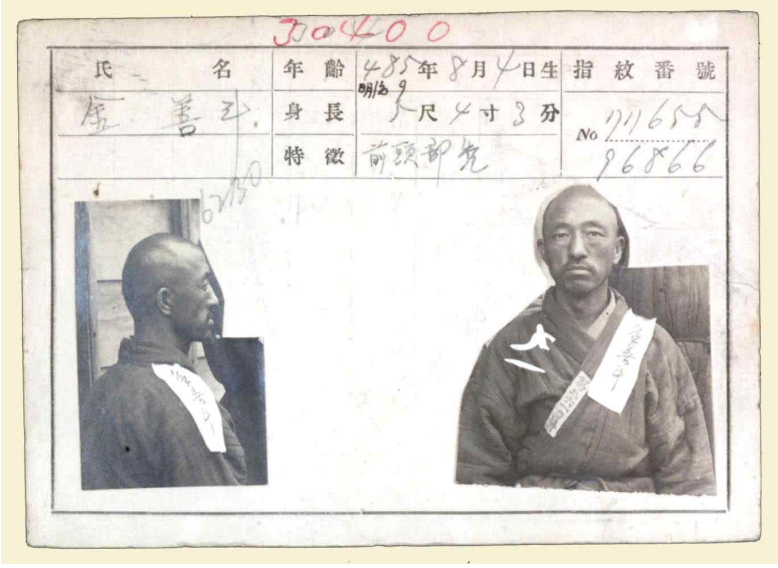

[그림 3-6]은 19세기 프랑스의 경찰 알폰소 베르티옹(Alphonse Bertillon)이 자신을 모델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범죄자 신체측정 카드이다. 베르티옹은 효율적인 범죄자 식별과 검거를 위해 사진과 인체 각 부분을 측정한 값을 함께 담은 카드를 고안했다. 얼굴 이미지가 체계를 갖춘 정보로 사용되어야 했기에 피의자 사진 촬영법도 표준화시켰다. 인물카드에 부착된 사진 촬영 방식은 베르티옹이 세운 범죄자 초상사진 촬영 지침을 따르려 하고 있다.[111] 그러나 피사체와의 거리나 렌즈의 사용,

111) 개인식별 도구는 경찰과 행형기관 모두 업무상 필요로 했다. 『(防犯搜査)刑事警察要綱』에서는 개인식별 사진은 베르티옹식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식은 다음과 같다. 특징을 정확히 표현해야 하며 특히 형사사진은 수정을 가해서는 안된다. 정면과 오른쪽 측면을 촬영해야 한다. 정면을 촬영하는 것은 코, 광대뼈, 하악(下顎), 귀 등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또 우측을 촬영하는 이유는 이마, 콧마루, 상악

조명, 배경 등의 표준을 엄밀하게 지키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 생산 초기 사진 중 일부, 특히 [그림 3-7] 왼쪽 윤좌진의 우측면 사진처럼 어설프게 촬영된 측면사진은 실무자의 이해 부족 및 촬영 대상 역시 검거 후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7] 오른쪽 최태식의 사진은 인물 뒷 편에 검은 막이 설치되어 있어 촬영을 표준화하려는 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진이 대체로 정면과 측면을 촬영하는 최소한의 지침만 준수하고 있다.[112]

[그림 3-6] 베르티옹의 인체측정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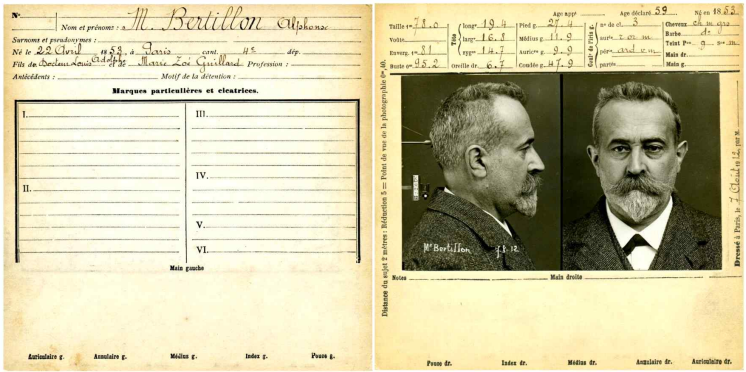

[그림 3-7] 윤좌진과 최태식의 인물카드 전면 (A양식)

(上顎), 하악, 귀등의 특징을 밝히기 위함이다. 인물의 사진은 전신의 7분의 1로 촬영해야 한다. 大西輝一, 1936 앞의 책, 138쪽.

112) 베르티옹이 측면사진을 도입한 이유는 정면상이 과학적인 식별을 방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정면상의 표정이 심리적이면서 비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측면의 골격, 표정과 달리 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의 선은 보다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 객관적인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우, 2009「사진, 닮음, 식별: 베르티옹 사진연구」,『한국사진학회지』(20), 134~147쪽.

범죄자 초상사진 촬영에 대한 규범은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를 생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형무소의 경우 경찰기관에 비해 용도상 식별에 대한 비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를 위한 확인용 도구 기능 이상 재현의 엄밀함을 사진에서 추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형무소 측면사진은 B양식에서 사라졌다가 C양식에 잠시 다시 나타나고 D양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A양식에서 복사한 사진이 부착된 카드는 27여 장으로 대부분 고등과 사진장(寫眞帳)에서 복사한 사진이다. 단체 사진에서 잘라냈거나, 평상복을 입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대부분이어서 수집한 것들로 보인다. 일부 인물은 요시찰인이라 기재되어 있어 1919년과 1922년 사이 조선에 이미 요시찰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A양식 카드는 3.1운동 이후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사진 촬영기관은 서대문 감옥과 경성감옥, 수형 기관이며 복사한 사진은 고등과 사진장에서 복사한 것들이다. 양식의 항목은 수형정보 중심이다. 수형기관은 별도의 내규를 통해 사진을 촬영하고 원판을 관리했다. 사진 촬영 양식은 사진을 효율적인 식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고안된 19세기 프랑스 경찰 알폰소 베르티옹이 세운 표준을 준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정면과 우측면을 촬영하는 것 이상 따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관 사이 촬영양식도 통일되지 않았다. 인물을 단독으로 촬영한 사진은 거의 없으며 여러 인물을 함께 촬영한 후 인물별로 자른 것을 카드에 부착했다. 무성의한 사진 절단 모양과 카드 여백의 갈겨쓴 메모들은 인물카드가 그때그때 정보를 갱신하고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 생산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제 2 절 수사자료 중심 과도기 양식

B양식은 1923년부터 1930년 사이 사용되었다. [표3-3] B양식 전면을 살펴보면 사진 하단에 촬영기관과 촬영일, 원판번호를 기입하게 했다. A양식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로 촬영 시점 인물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카드 생산일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외에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경기도 내 경찰서(종로서, 동대문서, 본정서, 서대문서)에서 촬영한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표 3-3] B양식 카드 전면

<table>
<tr><td rowspan="2">이름
(氏名)</td><td colspan="2"></td><td>신장 (身長)</td><td>尺 寸 分</td><td rowspan="2">지문번호
(指紋番號)</td><td rowspan="2">No.-------</td></tr>
<tr><td>이명
(異名)</td><td></td><td>특징 (特徵)</td><td></td></tr>
<tr><td colspan="6">사진</td></tr>
<tr><td colspan="3">大正 年 月 日 ニ於テ撮影</td><td colspan="3">보존원판(保存原板) (　)第　　號</td></tr>
</table>

B양식 후면에 기재하는 정보는 4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3-4] B양식카드 후면을 살펴보면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항목들은 다른 범주와 굵은 인쇄선으로 분리되었다. 첫 번째 범주는 신상정보이다. 해당 항목은 본적, 출생지, 주소, 연령, 신분, 직업, 호주의 이름, 호주와의 관계, 부모의 이름이다. 두 번째는 경무정보로 인치년월일, 인치관서, 인치사유가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수형정보이다. 석방일이 첫 번째 항목이고 그 외 세부 항목인 수형 사항은 죄명, 형명과 형기, 언도년월일, 언도

관서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수사자료 정보이다. 전과종별과 범죄수, 범죄 상용 수단, 공범자 이름, 출옥 후 귀주지, 기타 사항이다.

[표 3-4] B양식 카드 후면

<table>
<tr><td colspan="2">본적 (本籍)</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출생지 (生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소 (住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연령 (年齒)</td><td></td><td>신분 (身分)</td><td></td></tr>
<tr><td colspan="2">직업 (職業)</td><td></td><td>호주의 이름
(戶主ノ氏名)</td><td></td></tr>
<tr><td colspan="2">호주와의 관계
(戶主トノ續柄)</td><td></td><td>부모의 이름
(父母ノ氏名)</td><td></td></tr>
<tr><td colspan="2">인치년월일 (引致年月日)</td><td colspan="3">大正　　年　　月　　日</td></tr>
<tr><td colspan="2">인치관서 (引致官署)</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인치사유 (引致事由)</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5">처분결과 (處分結果)</td><td>석방 (釋放)</td><td colspan="3">大正　　年　　月　　日　　釋放</td></tr>
<tr><td rowspan="4">수형사항 (受刑事項)</td><td>죄명 (罪名)</td><td colspan="2"></td></tr>
<tr><td>형명, 형기 (금액)
(刑名, 刑期 (金額))</td><td colspan="2"></td></tr>
<tr><td>언도년월일 (言渡年月日)</td><td colspan="2">大正　　年　　月　　日</td></tr>
<tr><td>언도관서 (言渡官署)</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비고 (備考)</td><td colspan="2">전과종별과 범죄수(前科種別及犯數)</td><td colspan="2">計犯</td></tr>
<tr><td colspan="2">범죄상용수단 (犯罪常用手段)</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공범자 이름 (共犯者氏名)</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출옥후 귀주지 (出獄後ノ歸住地)</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기타 (其他)</td><td colspan="2"></td></tr>
</table>

B 양식에 새로 추가된 부분은 경무정보 항목 및 수사자료 항목이다. 추가된 항목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물을 시찰하고 관리하려는 제작 목적을 드러낸다. 경무 항목은 인물 취조를 담당한 관서를 지시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정보획득 여지를 남긴다. 또한 전과, 인치년월일, 언도년월일, 석방일 항목으로 단선적 시간 경과에 따른 인물의 행적을 정리할 수 있다. 더불어 범죄 수단, 공범자 이름, 출옥 후 귀주지는 인물의 행동 양

식, 인적망, 행동반경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 수감된 인물의 관리 보다 인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재발 발생을 막아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인 사찰에 필요한 정보 성격이 크다. 수사 및 사찰자료 기능이 강화된 B양식의 등장은 시점상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설치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인물카드의 생산 및 관리 주체가 본격적으로 경찰기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113]

C양식은 1929년부터 1931년 사이 사용되었다. 불과 3년 가장 짧은 기간 사용되었음에도 B양식보다 많은 양이 남아있다. C양식은 일정 기간 동안 B양식, D양식과 함께 사용되었다. [표 3-5] C 양식 전면을 살펴보면 이름과 지문번호 항목만 남고 다른 항목은 후면으로 옮겨졌다. 사진이 담고 있는 시각 정보 즉, 인상(人相)정보에만 집중하기 위한 방향으로 양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양식에 이르면 카드 전면에 촬영일과 원판번호만 남고 모든 항목이 후면에 실린다.

[표 3-5] C양식 카드 전면

이름 (氏名)		이명(異名)		지문번호 (指紋番號)	No-------
사진					
昭和 年 月 日 ニ於テ撮影			보존원판(保存原板) ( )第 號		

[표 3-6] C 양식 후면을 살펴보면 B양식과 마찬가지로 신상, 경찰, 수형, 수사자료 4가지 정보 유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B양식

113) B 양식은 사진촬영일 및 인치・언도년이 大正12년(1923)으로 기재되는 시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1922년 12월에 설치되었다.

과 비교했을 때 일부 정보는 보강되거나 대폭 축소되었고, 한 항목은 정보 유형이 다른 범주로 재분류되었다.

[표 3-6] C양식 카드 후면

본적 (本籍)	縣 市 町 付 道 郡 面 里 番地				
출생지 (生地)	縣 市 町 付 道 郡 面 里 番地				
주소 (住所)	縣 市 町 付 道 郡 面 里 番地				
연령 (年齒)	年 月 日生				
직업 (職業)		신분(身分)		신장(身長)	尺 寸 分 米
최근형 (最近刑) / 기타전과 (其他前科)					
죄명 (罪名)					
형명 (刑名)					
형기 (刑期	年 月 日			年 月 日	
입소년월일 (入所年月日)	昭和 年 月 日			昭和 年 月 日	
출소년월일 (出所年月日)	昭和 年 月 日			昭和 年 月 日	
형무소 (刑務所)					
검거관서 (檢擧官署)					
수법원지번호 (手口原紙番號)					
수법 (手口)					
배회지 (徘徊地)					
특징 (特徵)					

신상정보 항목을 보면 B양식에 있던 호주의 이름, 호주와의 관계, 부모의 이름 항목이 C양식에서 삭제되었다. 실제 B양식에 호주 관련 항목이 기재된 카드는 거의 없다. 호주 및 호구 정보는 경찰이 '호구조사규정'에 따라 생산한 호구조사부 등 별도의 기록물을 참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C양식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1930년대 들어서는 불필요한 정보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호주 정보를 본적・출생지・주소 항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세 항목은 모든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 정보처럼 보이기 쉬우나 별도의 쓰임새를 가지고 있던 항목이다. '본적(本籍)'이란 법률상 가(家)의 소재지이다. 가(家=戶)는 호주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친족 구성을 가리키는 단위이다. 본적은 「민적법」에 의거해 생산된 민적부 항목으로 등장한 당시 조선에서는 새로운 개념이었다. 본래 본적은 가의 생활 근거지, 거주하고 있는 곳을 의미했으나 인구 이동이 심해지면서 고향집이나 옛 주소를 기반으로 삼은 가상의 좌표였고 대게 "조상 전래의 정주지"로 규정되었다. 「조선호적령」(1922.12.18. 발포, 1923.7.1. 실시, 조선총독부령 제154호)이 실시되면서 「민적법」은 폐지되었고 민적부 대신 호적부를 두게 되었는데 큰 틀은 기존과 다르지 않았다. 민적부나 호적부 모두 국가가 주민 통제와 관리를 위해 호(戶)별 모든 구성원을 등록하고 신분과 변동사항(분가・혼인・입양 등)을 집약해 정리해 놓은 장부이다.[114] 따라서 본적은 인물이 국가에 등록되어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본 항목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장부를 통해 가족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단서로 쓰일 수 있었다. 출생지와 주소는 각각 인물의 성장 및 생활 거점이 되었던 곳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한편 C양식부터 본적, 출생지, 주소 란에 일본 행정 단위 및 조선 행정 단위를 병기하여 인쇄한 것은 일본과 조선 사이 인구 이동이 상당히 활발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라 인구 이동이 심해져 호적을 근거로 집계한 인구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염려했다. 그로 인해 도입한 국세조사(國勢調査)는 조선에서도 1925년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후 5년 간격으로 실시되었다. 국세조사는 호적에 의한 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상주인구(常住人口)가 아닌 현재 시점 일정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현주인구(現在人口)를 조사해 이동을 감안한 인구를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1925년 조선 국세조사 홍보 포스터를 살펴보면 국세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한다. 1. 씨명 또는 성명 2. 성

114) 서호철, 2007 앞의 논문, 147~149쪽, 179~180쪽.

별 3. 출생년도 4. 배우(配偶)관계, 5. 본적 또는 국적 이다. 국세조사는 이전 경찰이 주도했던 민적실사나 경찰 호구조사에 비해 간결한 정보를 수집했고 감시와 관리의 성격은 축소되었다.[115] 그러나 국가가 지금 현재 특정 지역에 인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주민을 가(家) 단위 관계망 안의 인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 분류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주민 관리 양태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어쩌면 지역공동체에 밀착해서 인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왔던 경찰이 변동하는 사회상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경찰 입장에서도 교통의 발달 및 활발한 인구 이동 상황은 새로운 방범방책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관리 대상인 인물이 현재 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지역 간 혹은 지역 내부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변동 정보를 상하부 기관과 관련 지역기관에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호구 단위의 인물 조사로는 개인의 이동 상황까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에서 근무하다 24년 형사과로 이동한 요시카와 스미카즈(吉川澄一)는 주민에 대해 호구조사부 정리와 동시에 주민 한 명당 각 한 매씩 카드 형식의 호주색인표(戶主索引票)와 호구색인표(戶口索引票)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호구조사를 경찰 차원의 국세조사로 정의했다. 이 표의 생산기관은 경찰 가장 하부 조직이자 지역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파출소와 주재소이다. 파출소와 주재소는 작성한 표를 본서(本署)로 송부하고 추가로 주민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한다. 상부인 경찰서는 파출소의 보고사항에 따라 송부받은 카드를 정리하여 변동상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이 호주 및 호구색인표 체계의 기본 틀이다. 색인표는 모든 주민의 이동 상황을 경찰에서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배 중인 피의자 검거에도 이점이 있어 감식설비의 일부로 제안되었다.[116] 호주・호구 색인표제도가 실제 제안이 되

115) 박명규, 서호철, 2003『식민권력과 통계-조선총독부의 통계체제와 센서스』, 서울대학교출판부, 81~83쪽.

116) '호구색인표(戶口索引票)'에는 이름, 주소, 직업, 나이, 본적, 출생지, 호주와의 관계,

었고 어느 수준까지 시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감식 도구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호구 정보는 업무상 기초지식이었다. 또 경찰에게도 호구에서 개인 단위로 관리 방법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어서 나머지 항목을 살펴보면, 경찰정보 항목에서는 검거 관서만 남고 인치년월일(引致年月日)과 인치 사유는 삭제되었다. 인치 사유는 형명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사찰 및 관리 업무상 인치 시점보다 C양식에 추가된 입·출소 시점이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수사자료 항목에서 수법은 B, C양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출옥 후 귀주지는 배회지로 변경되었고, 공범자 이름 항목은 삭제되었다. 정보가 기재된 카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관리자가 기입하기 번거로운 정보인데다 호주정보와 마찬가지로 요시찰인 명부 같은 대체 기록을 참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A, B양식에 신상정보 범주에 속해있던 '특징'은 C양식에 와서 수사자료 범주로 재분류되었다. D양식으로 넘어가면 '특징'은 '특징번호'로 전환된다. 특징번호는 경찰 간 피의자 얼굴 특징을 묘사할 때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C양식의 특징 항목이 수사정보로 범주가 바뀐 것은 사람의 외형, 시각 이미지를 좀 더 체계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이용하려는 준비과정이다. D양식의 특징번호는 그에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징 및 특징번호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전체 카드를 검토했을 때 중복되는 원판번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인물카드는 한 기관에서 카드를 생산하고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판번호 부여에 순차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림 3-8] 동대문서에서 촬영한 홍종현의 사진을 살펴보면 배경에 四三六一이라고 쓴 띠지가 부착되어 있다. 띠지의 숫자 4361은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원판번호와 같다. 경찰부와 그 관할 하에 있는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은 인물이 카드에 기록된 원판번호과 동일한 숫자를 몸 또는 배경에 부착하고 있

이사한 날(轉住年月日), 전(前)주소, 관할 파출소 또는 주재소 명, 카드작성 연월일을 기입하기로 한다. '호주색인표(戶主索引票)'에는 이름, 주소, 직업, 나이, 본적, 가족 및 고용인 전부의 성명과 나이, 호주와의 관계를 기입하기로 한다.

『警務彙報』 제231호, 1924년 10월 「刑事警察に就ての片片(2)」 吉川澄一, 47~48쪽.

다. 이는 카드를 관리한 기관에서 촬영 전 미리 원판번호를 부여했거나 통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그림 3-9]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권오설의 카드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했을 경우 인물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수인번호를 몸에 부착했다. 원판에 번호를 기재한 후 현상하여 사진에 좌우 반전된 숫자가 함께 인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형무소 사진은 촬영 이후 원판번호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서대문형무소만 중판 원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8] 홍종현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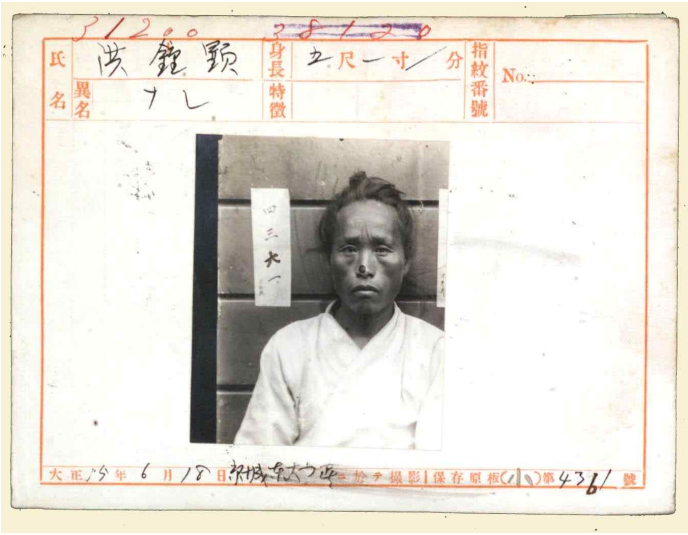

[그림 3-9] 권오설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그림 3-10] 김두수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인물카드를 생산하고 관리한 기관이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라면 형사과에서 촬영한 사진을 표준 양식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림3-10] 김두수의 인물카드는 1928년 형사과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했다. 정면과 우측면을 연속으로 촬영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기관의 사진 촬영 방식은 통일되지 않았다. 형사과 및 경찰부는 대체로 정면과 우측 상반신을 연속으로 촬영했다. 형무소는 정면 상반신, 경찰서는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과 정면과 우측면을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이 혼재되어 있다.

복사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도 인물카드를 생산하고 관리한 기관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로 간주하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복사한 사진으로 카드를 제작한 경우 카드 전면에 인쇄된 촬영(撮影) 대신 복사(複寫)라고 임의로 써넣는다. 사진 복사를 담당한 기관은 전부 형사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림 3-11]은 복사한 사진을 부착한 김지섭의 인물카드이다. 사진 하단 복사 기관에 당형사과(當刑事課)라 기재되어 있다. 인물카드에서 복사 기관을 당형사과 또는 당과(當科)로 기재한 카드를 약간 발견할 수 있다.[117]

117) B 양식 김지섭 ia_1426, 한석건 ia_5883의 카드, D 양식 김원정 ia_1174, 김윤회 ia_1206, 서정익 ia_2571 등

[그림 3-11] 김지섭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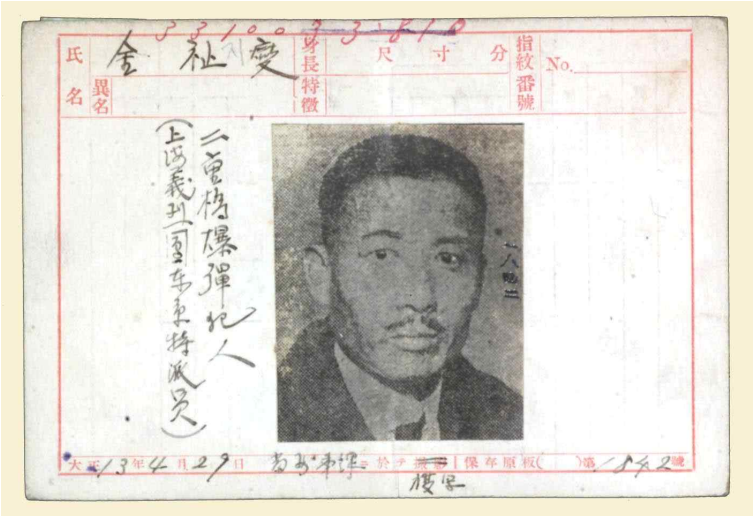

[그림 3-12] 조용주의 인물카드 2종 전면 (B양식)

B 양식부터 한 인물이 서와 형무소에서 각각 촬영한 사진이 부착된 두 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조용주는 [그림3-12]의 종로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 두 종을 가지고 있다. 형무소로 이동한 인물은 머리를 깎고 수형복을 입는다. 인물카드 관리기관인 경찰은 서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인물이 평상복을 입은 인상과 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석방된 후의 인상, 두 가지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 마땅히 인물에 대한 최대한 많은 시각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에 유리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복사한 사진 중 일부는 단체 사진에서 인물별로 잘라내어 별도의 카드를 만들지 않고, 단체 사진 그대로 부착하여 관계망 정보 습득을 보강했다. [그림 3-13]은 강원호의 이름으로 만든 인물카드이다. 형사과에서 복사한 것으로 원판 번호가 있으나 인물별도 별도의 번호를 부여했다. 아마 인물 수대로 사진을 복사하거나 별도의 음화를 만들어 정리기준에 따라 각각을 배열 혹은 삽입해 놓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3] 강원호의 인물카드 전면 (B양식)

C 양식 사용 시점부터는 촬영 방식이 완전히 통일되지는 않았으나 경

찰서에서는 대체로 형사과 표준을 따라 정면과 측면을 연속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서대문형무소 생산 사진은 정면 한 장과 정·측면 한 장이 혼재되어 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부착한 [그림3-14] 이낙영의 인물카드를 보면 몸에 부착한 띠에 사진 촬영일인 소화 5년 9월 1일을 가리키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다. 1930년 일정 기간 인물이 부착한 띠에 촬영일을 함께 기입하기도 했다. 이 방식은 D 양식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사진만으로 촬영 시점과 인물의 인상을 대조해보거나, 형무소에서 경찰기관으로 기록을 넘길 때 등 효율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보인다.

[그림 3-14] 이낙영의 인물카드 전면 (C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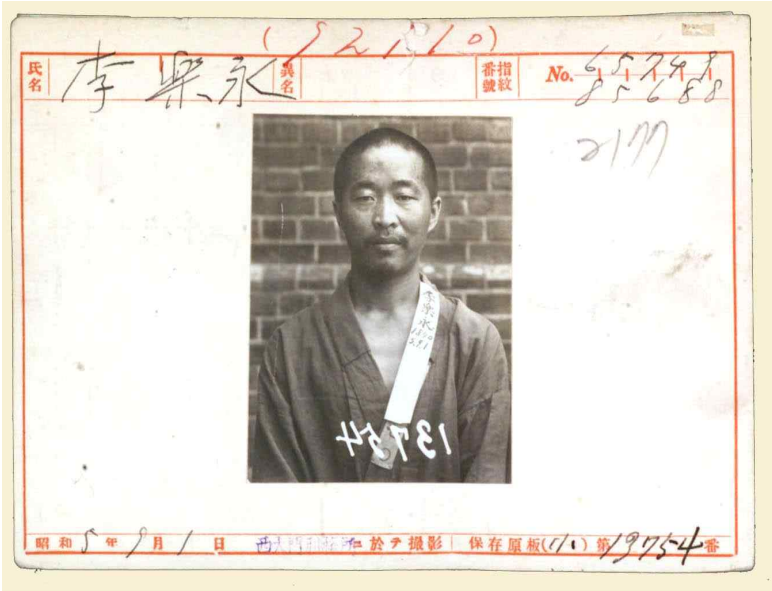

한편 B 양식을 사용한 시점부터 인물이 이명(異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명으로 별도의 지시 카드를 만들었다. 지시 카드에는 인물의 사진을 붙이지 않았고 사진이 부착된 인물카드를 열람할 수 있게끔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참조하라는 메모를 기재해놓았다. [그림 3-15] 주현갑은 총 3장의 인물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2장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카드는 각각 주현갑의 이명인 '임희준', '임형순'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사진 대신 '주현갑을 볼 것'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지시카드는 인물카드에서 색인 내지 주석 역할을 한다. 지

시카드의 존재는 처음부터 인물카드가 사진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록이고 사진으로 인물의 인상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그림 3-15] 주현갑의 인물카드 3종 전면 (C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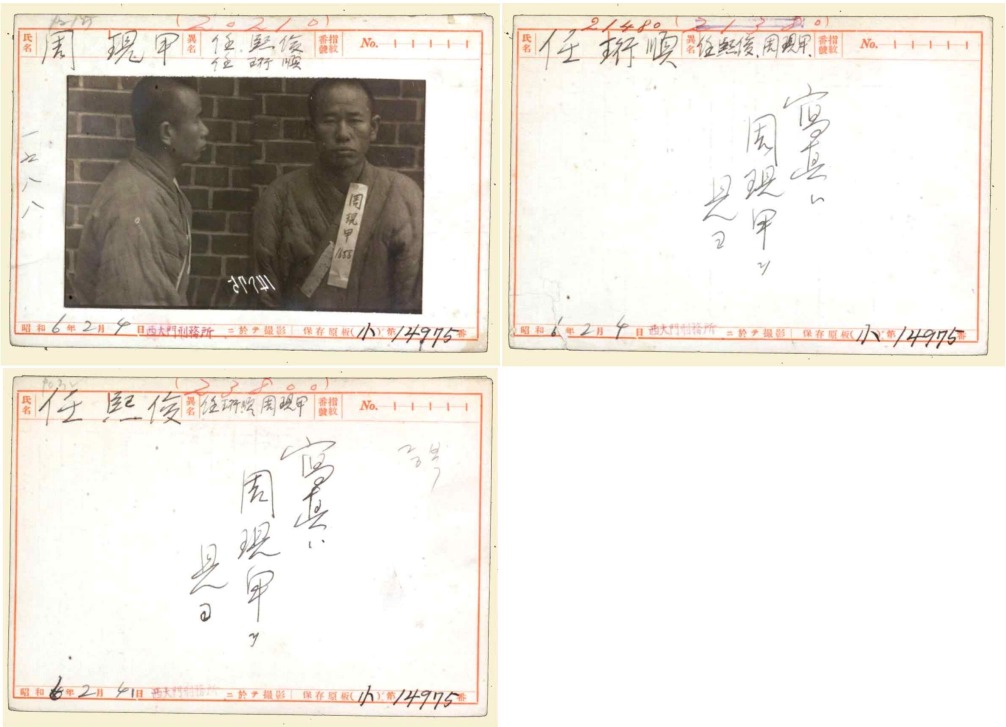

제 3 절 연계성이 강화된 최종양식

D양식은 1931년부터 사용된 카드 양식이다. 1944년 생산된 카드까지 남아있다. 가장 오랜 기간 사용한 만큼 가장 많은 양이 남아있다.[118] D 양식에는 과거에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다시 정리하여 만든 카드가 섞여 있다. 사진은 주로 1920년부터 1926년, 1928년부터 1930년 사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D 양식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점은 급격히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1931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표3-7] D양식 카드 전면을 살펴보면 사진과 사진 생산 관련 정보인 촬영일, 촬영기관, 보존원판번호 항목만 남았다. C 양식까지 전면에 있던 이명과 지문번호는 후면으로 이동해 완전히 사진 중심 구조를 갖추었다. 신상과 수형, 경찰 정보 항목은 C 양식과 거의 동일하다.

[표 3-7] D양식 카드 전면

사진	
昭和　年　月　日　ニ於テ撮影	보존원판(保存原板) (　)第　號

[표3-8] D양식 후면의 검거, 상용수법개요는 새로운 항목처럼 보이나 이전 양식에 상동한 정보를 담는 항목이 있다. '검거' 항목은 목적이 불분명한데 기록 작성자는 검거 항목에 이미 검거관서 항목에 기재한 정보를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추가로 검거일을 기재하기도 했다. 상용수법개

118) D양식 후면은 이전 양식과 달리 가로로 기입할 수 있도록 지면이 편집되어 있다.

요는 B양식에 있는 범죄상용수단(犯罪常用手段)이나 C양식에 있던 수법(手口) 항목같이 이용되었다. 보통 어떤 경로로 체포되었는지 검거사유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전보다 넓게 편집하여 정보를 더 축적하는 차원에서 기입을 독려하려 했던 것 같다.

[표 3-8] D양식 카드 후면

<table>
<tr><td colspan="2">이름 (氏名)</td><td></td><td colspan="2">이명 (異名)</td><td></td><td>지 문 번 호
(指紋番號)</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연령 (年齒)</td><td colspan="3">年 月 日生</td><td>수 법 번 호
(手口番號)</td><td>第 號</td></tr>
<tr><td>신분
(身分)</td><td></td><td>직업
(職業)</td><td></td><td>신장
(身長)</td><td>尺寸分
米</td><td>특 징 번 호
(特徵番號)</td><td colspan="2">第 號</td></tr>
<tr><td colspan="2">본적 (本籍)</td><td colspan="6">縣 市 町 忖
道 郡 面 里 番地</td><td rowspan="3">상용수법
개요
(常用手口概要)</td></tr>
<tr><td colspan="2">출생지 (生地)</td><td colspan="6">縣 市 町 忖
道 郡 面 里 番地</td></tr>
<tr><td colspan="2">주거 (住居)</td><td colspan="6">縣 市 町 忖
道 郡 面 里 番地</td></tr>
<tr><td rowspan="7">최근형(最近刑)</td><td colspan="2">죄명 (罪名)</td><td colspan="3"></td><td rowspan="2">기타전과
(其他前科)</td><td rowspan="2">검거
(檢擧)</td><td rowspan="7"></td></tr>
<tr><td colspan="2">형명형기(刑名刑期)</td><td colspan="3">懲役
禁錮 年月日</td></tr>
<tr><td colspan="2">언도관서(言渡官署)</td><td colspan="3"></td><td rowspan="5"></td><td rowspan="5"></td></tr>
<tr><td colspan="2">입소년월일
(入所年月日)</td><td colspan="3">昭和 年月日</td></tr>
<tr><td colspan="2">출소년월일
(出所年月日)</td><td colspan="3">昭和 年月日</td></tr>
<tr><td colspan="2">형무소명(刑務所名)</td><td colspan="3">刑務所 支所</td></tr>
<tr><td colspan="3">검거관서 (檢擧官署)</td><td colspan="3">道 警察署</td></tr>
</table>

실제 상용수법개요란을 이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림 3-16] 오산세의 카드처럼 보통 검거사유를 자세히 기재했다. 오산세의 카드 후면 상용수법기재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지식계급에 권유하여 공산당을 조직하거나 또는 스스로 직접 노농민층에게 들어가 동지를 획득하는 의미에서 좌익결사를 조직할 우려가 있다.’

[그림 3-16] 오산세의 인물카드 (D양식)

수법과 관계가 있는 항목은 상용수법개요 외에 수법번호가 있다. 수법번호는 조사·연구로 다양한 수법을 표준화하고 각 수법에 대응하는 번호를 조합한 결과일 것이나 수법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가 없고 조합법에 대한 정보도 없다. 수법은 흉기의 종류나 범죄시기, 시각(時刻), 범죄 수단, 동기 등을 포괄하는 범죄행위 관련 항목이다. 조사연구 및 통계화 단계를 거쳐 수사의 기초로 이용할 지식이 될 수 있었다. 범죄자가 상습적, 반복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피의자와 범죄 수법을 대조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에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범죄 수법을 조사할 때 반복적 수단, 시간, 장소, 침입방식, 목적물, 특수한 습벽 등 항목을 조사하고 지문 원지에 기입하도록 권고받았다.[119]

범죄 수법 종류별 표준 숙어인 수법숙어(手口熟語)는 특정 범죄 형태를 칭하는 경찰 특수 용어이다. 범죄행위 관련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낸 것이다. 이를테면 Aの１ 更師은 '야간 옥내에 침입하는 범죄', A9の３ 浮巢는 '배 안의 금품을 절취하는 도둑', A１の2 下りは '천장으로 침입하는 방법'을 의미한다.[120] 수법숙어는 각각의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번호가 수법번호로 사용한 번호일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를 인치한 경찰은 수법을 검토한 후 해당되는 수법숙어 고유번호를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수법번호를 만들었을 것이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 노무라 카오루(野村薫)는 현재 경찰이 이용하고 있는 범죄 유형은 일본의 것을 응용한 것이나 조선식 범죄 발생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범죄가 점차 일본화 될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으리라 전망했다. 그럼에도 수법번호를 이미 정립하여 항목으로 만든 D양식 카드에 별도로 수법 기재 공란을 만들고, 지문 원지에 수법을 기입하도록 독려했다. 조선 상황을 반영한 범죄 수법 범주 지정과 종류 생성을 어떤 식으로든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징번호 역시 D양식부터 나타난 항목이다. 수법번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식을 번호로 대응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유형화, 표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외형 특징을 번호나 기호로 변환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로는 첫째, 경찰 간 정확한 의사소통 필요성 때문이었다. 수배자가 있어 관서 간 정보를 배포할 때 인물의 인상을 언어로 풀어낸 인상서(人相書) 속 묘사, 예를 들면 '보통 코' 같은 표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모든 사람이 같은 이미지나 형상을 떠올리게 하기 쉽지 않았다. 범인의 사

---

119) 山田一隆, 1931 앞 글, 44쪽.;『警務彙報』 제320호, 1932년 12월 「警察指紋統一實施滿一年に際し再び警察指紋の使命竝に犯罪手口に就て(2)」野村薫, 84쪽.
野村薫은 1928년경부터 1939년까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장으로 재직했다.

120) 수법 조사는 일본에서 사건 조사와 피의자 조사 두 종으로 이루어졌지만, 조선의 경우 피의자 조사만 이루어졌다.
野村薫, 1932 앞 글, 84~88쪽.

진이 있다고 해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전송사진은 아직 기술적으로 미흡했다. 전보로 수배할 경우 글자 수를 절약하기 위해 더욱 애매한 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필요했다. 따라서 사람의 외형 각 부분마다 몇 가지 특징을 추출했고 각 특징마다 숫자와 용어를 붙였다. 그리고 그 숫자나 용어를 조합하여 인물의 전체 인상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121]

평남 경찰부의 나카무라 타니아라우(中村谷洗)가 제안한 '사람의 생김새(相貌)를 구성하는 부분의 기초를 정하여 그 부분마다 부호 기호를 붙여 암호로 만들고, 범인의 생김새를 분해하여 만드는 수배 인상서'는 앞서 언급했던 19세기 후반 범죄자 초상사진을 개발한 프랑스 경찰 베르티옹의 초상언어(portrait photographique)에서 개념을 가져와 단순화시킨 것이다. [그림 3-16]『警務彙報』에 실린 인상서를 살펴보면 얼굴 각 부분을 몇 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각기 용어와 번호를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22]

그러나 초상 언어가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범인을 여러 경찰관이 묘사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 베르티옹은 얼굴 각 부분 특징을 지칭하는 단어(용어)를 만들고 경찰이 참조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만든 [그림3-17] 같은 일람표를 제공했다. 더 나아가 신속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용어를 축약했는데, 자료 분류와 검색 관점에서도 효율적이었고 전보를 보낼 때도 유리했다.[123] 그러나 수배와 관리

121)『警務彙報』제259호, 1927년 11월「犯人の手配人相書の研究に就て」中村谷洗, 93쪽.
122) 中村谷洗, 1927 위의 기사, 94쪽.
123) 초상언어는 경찰서 밖에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로 '말로 된 초상화'라 불렸다. 베르티옹은 피의자 얼굴에서 모든 특징을 기록하지 않고 특징적인 일부분만 기록하게 했다. 사진이 너무 많고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징만 추출해 기록한 언어는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를 배제하여 해석과 식별의 용이함을 이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범인을 인지한 즉시 이전에 학습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떠오르게 하기에는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시각 이미지보다 언어가 기억에 적합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박상우, 2009「사진과 언어: 베르티옹의 '초상언어'」,『프랑스학연구』48집, 339~355

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상 언어는 실무에서 거의 사용될 수가 없었다. 연속적인 차이를 두어 특징을 세분화시킨 것에 비해 사람의 시지각은 비연속적이여서 '처진 코'와 '약간 처진 코'를 모든 사람이 명확하고 동일하게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었다. 게다가 얼굴을 각 부분으로 분리해 설정한 모든 특징과 특징마다 붙은 단어와 이니셜을 경찰이 모두 익히고 외워서 이용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124)

[그림 3-17] 경무휘보에 실린 수배인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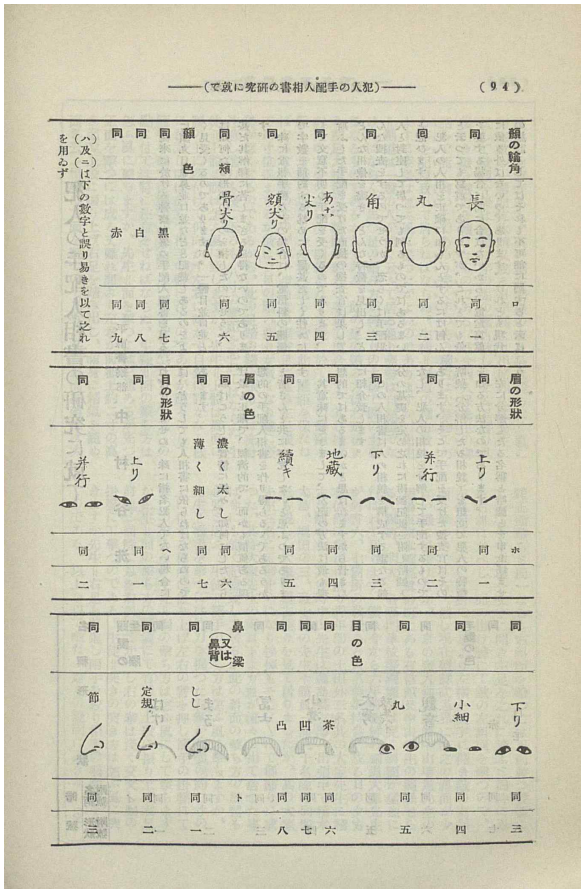

[그림 3-18] 베르티옹의 Portrait Parle 중 코의 모양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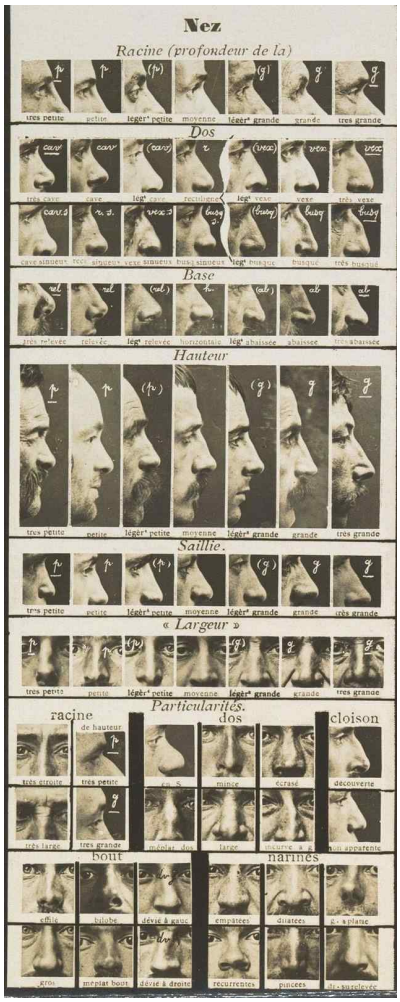

쪽.

124) 박상우, 2009 앞의 논문, 358쪽.

[그림 3-19] 서대문형무소 인상 및 특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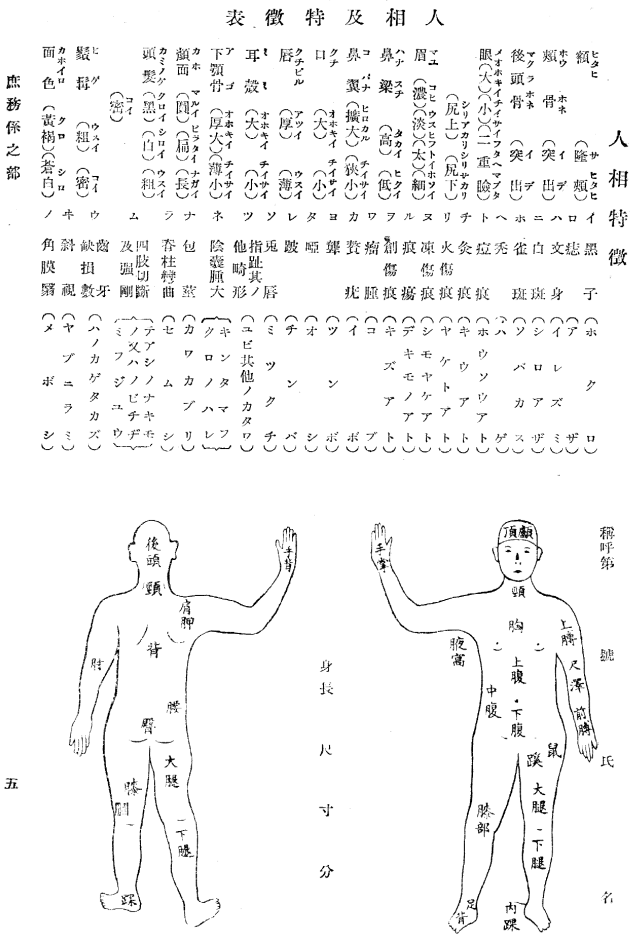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 같은 수형기관에서도 [그림 3-18]같은 인물의 인상 및 특징표를 별도로 만들었다.125) 베르티옹의 일람표 수준까지 세분화시키지 않아 '높은 코', '작은 입', '긴 얼굴' 수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문신, 구창(灸瘡), 사시(斜視) 등 26개의 특징을 제시하고 각 특징에 이로와(イロハ) 순으로 문자를 지정했다. 경찰이 이용했을 특징번호를 추출하기 위한 특징표도 서대문형무소에서 이용한 수준, 혹은 그 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형태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경찰에게 특징번호는 인물 식별과 관리, 더 나아가 실무자들 간의 정확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수법번호와 마찬가지로 특

125) 西大門刑務所職員交友會 編, 1939『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在監者の人相及特徵表設定の件'(達示 제37호, 1912.6.24.), 4~5쪽

징번호가 기입된 카드는 찾지 못했다. 아마 프랑스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기호를 익혀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특징번호는 사진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는 항목으로 설계되었고, 시각 정보를 체계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이용하려 했던 시도로 남아있다.

사진 촬영은 형무소의 경우 정면 상반신, 경찰서는 정면, 측면 상반신 연속촬영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D 양식에 새로 등장한 기관은 경성형무소로, A양식 카드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경성 감옥이다. 또한 이전 양식에서는 경기지역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D양식부터 경상남북도, 함경남도, 충청남도의 경찰서와 형무소에서 생산한 사진을 부착한 카드가 나타난다. 1931년 부서 확장과 함께 전 조선의 지문과 사진을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로 집중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진을 부착한 카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서에서 촬영한 사진은 경찰부 형사과로 모이게 되는 한편 원판도 중앙에 집중시켰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사진을 부착한 카드에는 원판번호를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또한 D양식 카드에는 D양식 이용 이전 생산된 사진을 부착한 카드도 몇 장 포함되어 있다. 형사과에 각종 자료를 집중시키면서 관리하고 있던 인물카드와 사진을 일괄 정리했기 때문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A양식부터 D양식까지 항목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전면은 다음 [표3-9]와 같다.

[표 3-9] 인물카드 전면 A양식부터 D양식까지 항목 변화

	A	B	C	D
카드전면	이름 사진 지문번호 신장 특징 연령	이름 사진 지문번호 신장 특징 이명 촬영일	이름 사진 지문번호 이명 촬영일 촬영기관 보존원판번호	사진 촬영일 촬영기관 보존원판번호

		촬영기관 보존원판번호		

카드 전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진이 제공하는 시각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항목이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양식부터 촬영시점과 촬영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촬영시점 인물의 인상을 확인할 수 있게 했고 담당관서를 기입함으로써 소재를 분명히 했다. 인물카드와 별도로 원판을 관리했다는 것을 원판번호 항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카드 후면 항목 변화는 [표3-10]과 같다.

[표 3-10] 인물카드 후면 A양식부터 D양식까지 항목 변화

	A	B	C	D
신상정보	본적 출생지 주소 신분 직업	본적 출생지 주소 신분 직업 연령 호주의 이름 호주와의 관계	본적 출생지 주소 신분 직업 연령 신장	이름 이명 본적 출생지 주거 신분 직업 연령 신장
경무정보		인치년월일 인치관서 인치사유	검거관서	검거관서 검거
수형정보	죄명 형명 형기 언도년월일 형기시작 언도재판소 집행감옥 출옥년월일과 사유 전과	죄명 형명 형기 언도년월일 언도관서 석방일	죄명 형명 형기 입소년월일 출소년월일 형무소 최근형	죄명 형명 형기 입소년월일 출소년월일 언도관서 형무소명

수사자료 정보		전과종별과 범죄수 범죄상용수단 공범자 이름 출옥후 귀주지	수법원지번호 수법 배회지 특징 기타전과	지문번호 수법번호 특징번호 기타전과 상용수법개요
기타	비고	기타		

카드 후면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형사과가 설치되는 시점인 A에서 B양식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항목 변화를 보여준다. 수사자료 정보는 보강되어 최종양식에서는 별개 자료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기타 전과 항목은 수형 사실과 관련된 항목이자 인물의 상용수법과 연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항목이라 위의 표에는 수사자료 정보로 분류하였다.

일제는 인물카드 생산 이전에도 사회 일탈행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활용해왔다. 사진은 이동하며 치안을 관장하는 경찰의 업무에 적합하고 유용한 도구였다.[126] 인물카드는 수형자와 범죄자, 피의자의 사진과 신상을 요약한 내용을 카드 형태로 제작한 기록물이다.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 감식 도구라기보다 방범상 인물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고안되었으며 사찰이나 수배 업무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1919년 3월 1일 이후 폭발적으로 생산되었다.

카드 양식은 총 4종으로 초기양식이 수형정보 중심이었다면 후기로

126) 일본에서 경찰은 1881년 이후 민간업자를 고용하여 중요 범인과 소매치기범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사진이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1896년 전람회를 개최했을 때였는데 치안용으로 소매치기범의 사진을 단속 형사, 순경에게 배부했다. 『警務彙報』 제207호, 1922년 8월 「警視廳指紋法と寫眞」 李鳳來, 100쪽.
조선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통해 치안 유지와 민간통제의 도구로 경찰이 사진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매일신보』 1921년 7월 26일 「쓰리盜賊의 寫眞帖, 각 경찰서에서 새로 작성」; 『매일신보』 1922년 11월 16일 「司法界에 스리寫眞, 전람회 모양으로 버려놓고 그자들의 행동을 조사한다」; 『동아일보』 1923년 9월 29일 「共進會와 犯罪團束」.

갈수록 경찰 수사 및 사찰 자료 기능이 강화된다. 사진 외의 인물 정보는 신상, 경무, 수형, 수사자료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진 부착 외에 모든 정보는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물카드가 인물의 인상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주로 쓰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인물카드가 사진 중심 기록이라는 사실은 지시카드의 존재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시카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빈 카드이다. 인물이 이명을 가진 경우 이명으로 빈 카드를 만들어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열람할 수 있게끔 했다.

정부기관은 1920년대 중반부터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행정방침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미 개인별로 대상을 관리하고 있었고 중앙기관의 행정상 문제의식을 유발했던 교통의 발달이나 인구이동 등 사회상을 일찍이 감지하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업무상 상당한 지체를 유발하는 제한상황이 있었기에 경찰은 사회변동 적응하며 사찰이나 인물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나갔다.

지문번호, 특징번호, 수법번호 같은 항목은 인물에 대한 고유번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징과 수법은 사진과 지문 외 수사자료의 필요성으로 인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특징번호와 수법번호는 인물의 외형적 특징과 범행 수법을 별도의 자료로부터 조합한 숫자이다. 위의 항목들은 인물카드가 타 기록 및 지식체계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또한 인물 관리를 위해 고안한 지식체계는 카드 정리 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식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형화시켜 개개인을 관리하는데 철저하고 유리한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과정이 인물카드에 담겨 있다.

제 4 장 결론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 경찰이 생산한 카드 형태의 기록물이다. 인물카드는 당시 사상 범죄자로 취급되었던 독립운동가의 희귀한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 사실을 증명하는 신빙성이 높은 기록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기록의 생산과 축적 과정의 맥락을 드러내고자 했다. 업무도구로 사용된 기록에는 관리기관의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기록이 개입한 활동이 반영되어있다. 기록이 가진 층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형태와 양식 등 표면적 성질, 기록을 관장하는 기관의 활동과 변천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을 살펴봐야 한다. 인물카드는 당시 새로운 기록 도구였던 사진이 제도와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사진은 이동이 잦은 경찰 업무 특성에 적합한 도구였다. 도구의 장점과 특성은 경찰 활동의 폭을 넓혀준 측면이 있다.

인물카드는 오로지 인물의 인상을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사진 중심 기록물이다. 양식은 시각 정보에 집중하고 수사자료 항목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3차례 갱신되었다. 인물카드는 엄밀한 의미의 과학적 감식 도구는 아니었으며 사찰과 수배 업무에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경찰은 카드 형태의 다양한 기록물을 생산했다. 카드 기록 체계는 즉각적인 인물 검색과 열람, 관리상 변동사항을 기재하고 인지하기 유용했다. 일본 경찰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업무상 범죄 예방에 높은 비중을 두는 행정경찰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인물카드와 시스템의 큰 틀은 프랑스 경찰인 알폰소 베르티옹이 고안한 것에서 차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물카드를 생산하고 관리한 기관은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이지만 초기 양식인 A양식은 사법부에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문번호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양식이 쓰이던 시기 오직 수형기관에서만 지문을 수집했고 사법부에서 일괄관리했다. 지문은 처음부터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공식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기록이자 자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인물카드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일부 담보했다. 인물의 동선과 행위

를 기재하는 항목이 보강된 카드 양식의 갱신은 인물카드 관리가 경찰로 넘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1920년 '경찰지문취급규정' 공포와 1922년 경찰지문을 관리하게 된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의 설치는 카드 양식 갱신과 연동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는 설치되자마자 다양한 범죄와 범죄예방부터 수사단계까지 포괄하는 범위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법경찰과 고등경찰의 업무를 나누였다. 대대적인 행정정리에도 기관을 유지했고 일제강점기 내내 감식시설을 보강하며 확장을 거듭해나갔다. 형사과는 전 조선 수사기관의 사진과 지문을 수집하여 관리하고 경찰기록을 연구하는 기록관리기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기관이 확보한 자료는 형사과가 효율적 수사 목적의 조선 수사기관 연락 중추 역할을 할 명분을 확보해 주었다. 범죄 증가, 교통 발달로 인한 범죄자의 이동 범위 확장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배포할 중앙기관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산업화·도시화와 교통의 발달에 따른 활발한 인구 이동은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주민 관리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로 행정방침이 변동하고 있었고 경찰 역시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방범방책을 새롭게 고민해야 했다. 경찰은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진과 지문을 보완할만한 식별 도구를 필요로 했다. 형사과는 범죄수법과 외형특징을 체계적인 지식체계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했다. 범죄수법과 특징은 연구와 표준화 과정을 거쳐 1931년부터 사용된 D양식에 정리된 형태로 나타났으나 기록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한 흔적은 없다. 다만 개인 식별을 강화하고 손쉬운 관리를 위해 개인을 유형화해야 하는 경찰이 방법론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형사과는 수사 지휘를 할 만한 권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수사 정보를 배포하는 중심 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카드 형태의 기록을 연구하고 제작하는 등 각종 경찰기록을 생산 및 관리·연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1930년대에 들어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사상범 검거는 법무국 시스템에 적체를 유발했고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의구심을 자아냈다. 일제는 재범방지 제도를 강화하며 상황을 해소하려 애썼으나

쉽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경찰의 이중, 삼중의 기록 수집과 생산 정황은 상황 통제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으로 읽힐 수 있다. 기록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형사과는 그 중심에 있던 기관이었다.

해방 후 생산된 인물카드는 일제가 개발한 기록체계를 한국 경찰이 이용했고 후에 정식으로 규정을 만들어 이어나간 정황을 드러낸다. 더불어 한국 경찰이 현용기록에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인물카드에 표기한 흔적은 당시 인물카드를 역사적 기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1964년 '피의자사진관리규정'은 한국경찰이 인물카드와 유사한 기록물인 '피의자사진표'의 가용범위를 수사로 한정시키는 한편 수법·특징정보를 사진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식별 기능과 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 해방 후 제작된 카드는 일제 생산 카드와 기능적으로 같은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인물카드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지만 기록물의 특성을 활용한 이용가능성을 높일 여지가 충분하다. 사진 속 인물의 서사를 보완해주는 기록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면 당시 관리 도구로만 쓰였던 인물 사진의 이용가능성은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인물카드는 해방 이후 경찰뿐 아니라 군기관, 안기부, 검찰 등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사찰조사기록의 초기 모델이자 일반 개인 관리 기록의 기본 틀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도 간주할 수도 있다. 식별과 관리라는 사진의 사회적 기능을 경찰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물카드의 고유성을 파악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베르티옹 시스템을 차용한 타국 경찰기록과의 비교연구이다. 식민지 조선 경찰 및 한국 경찰이 생산한 기록 및 시스템의 지역적 특수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찰의 인물카드 체계와 경찰 수사 발달 과정을 결부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인물카드 체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확보한 명분 같은 배경 맥락과 수사기록의 경향성 및 방향성을 고려한 연구는 한국경찰사에 더욱 다양한 논의를 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경찰기록은 공개된 것이 적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인물카드와 함께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사기록과 자료들이 공개, 발굴되고 경찰기록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대한민국 관보
(http://theme.archives.go.kr/next/gazette/viewMain.do)
조선총독부 관보
(https://www.nl.go.kr/NL/contents/N20302010000.do)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警務彙報』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1930『朝鮮警察概要』
大邱刑務所 編, 1932『大邱刑務所例規』
西大門刑務所職員交友會 編, 1939『西大門刑務所例規類纂』
大西輝一, 1936『(防犯搜査)刑事警察要綱』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
통계청 (광복이전통계, http://kostat.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단행본

국가기록원, 2017『근대 사법제도와 일제강점기 형사 재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_____, 2012『일제문서해제 행형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편, 1991『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1
_____, 2009『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 해제』, 국가편찬위원회

권행가, 2015『이미지와 권력』, 돌베개.
문준용, 2010『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는 대한민국』, 역사비평사.
박명규・서호철, 2003『식민권력과 통계』, 서울대학교출판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2004『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이경민, 2010『제국의 렌즈』, 산책자.
한국기록학회 엮음, 2008『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나루사와 아키라, 2004『일본적 사회질서의 기원』, 박경수 옮김, 소화.
리차드 볼턴 엮음, 2001『의미의 경쟁』, 김우룡 옮김, 눈빛.
Heather MacNeil and Terry Eastwood (Editor), 2017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Second Edition)*, Libraries Unlimited.
鈴木敬夫, 1989『法을 통한 朝鮮植民地 支配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韓國警察史編纂委員會 編, 1972 韓國警察史 1, 內務部治安局.
_____, 1973 韓國警察史 2, 內務部治安局.

3. 논문

권행가, 2005「高宗 皇帝의 肖像 -近代 시각매체의 流入과 御眞의 변용 과정-」, 홍익대학교 미술사학사 박사논문.
김정은, 2001「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 내용과 논리」,『역사와 현실』39.
민선유, 2018「조선사편수회 유리건판 사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논문.
박경목, 2014「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여수감자 현황과 특징」,『한국근현대사 연구』68.
_____, 2018「일제강점기 수형기록카드 현황과 명칭」,『한국독립운동사 연구』64.
_____, 2018「3・1운동 관련 서대문형무소 수감자 현황과 특징」,『인문과학연구』26.
박상우, 2009「사진과 언어: 베르티옹의 '초상언어'」,『프랑스학연구』48.

_____, 2009 「사진, 닮음, 식별: 베르티옹 사진연구」, 『한국사진학회지』 20.
박순영, 2006 「일제 식민주의와 조선인의 몸에 대한 “인류학적” 시선」, 『비교문화연구』 12(2).
선 일, 2004 「일제시대 학술조사 사진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논문.
서호철, 2007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 호적제도의 변용과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안자코 유카, 200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양홍준, 2006 「통감부시기 형사경찰제도와 범죄 수사」, 『한국사학보』 22.
오춘영, 2017 「일제강점기 도리이류조(鳥居龍藏)의 충북지역 인류학 조사 사진 분석」, 『백산학보』 108.
이동언, 2018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로 본 식민통치의 실상 - 천안지역 인물을 중심으로」, 『유관순 연구』 23.
이애숙, 2014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장 신, 1998 「1920년대 民族解放運動과 治安維持法」, 『學林』 (19).
조영준, 2016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를 활용한 身長연구의 재검토 - 자료의 비판적 이해와 가공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60.
황인혁, 2018 「질병환경과 영양접근성이 조선인의 신장에 미친 영향 분석」, 『경제사학』 67
Joan M. Schwartz, 1995 *“We make our tools and our tools make us”: Lessons from photographs for the Practice, Politics, and Poetics of Diplomatics*, Archivaria 40.

Abstract

The management and the use of watchlist car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Jungwon HAN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atchlist card is a record produced by the Japanese police throughout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a record in the type of a card with a photo attached to a form which can record personal inform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information. After liberation, it went through the National Police Office and the National Police Headquarter and now is owned and manag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atchlist card is the result of deciding, collecting, and structuring of what information to gather to achieve the agency's goals. Therefore, to interpret the type of record and the inform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agency which produced and managed the record.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background of the p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ecord as linking and analyzing the process of the record' s accumulating and changes in related agency and moreover to open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watchlist card for more than the evidence of the activity of independent activists.

To meet the aim, this study, first analyzes the watchlist card so that the information which the producers of the card needed is identified and involved activities and the orientation of the record are inferred. Second,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he record is reviewed. In addition, since the record includes watchlist cards produced after the libera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cards were still used as the means of monitoring doubtful persons, the police system after the liberation and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Suspects' Photography' promulgated in 1964 are reviewed. Finally, 『Gyeongmuhwibo』, a publication published mainly for police officers, and other related newspaper articles are accordingly reviewed.

It is possible that the initial watchlist cards were managed by the judiciary. This is because the time period when fingerprints were collected only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eriod of using the initial form overlap. The renewal of the form is link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inal affairs division of the police department in Gyeonggi-do, which was in charge of the creation of the regulation for the police collecting fingerprints and the management of the fingerprints. It is suggested that producing and managing of the cards have entirely become the job of the police considering that the cards were additionally used for other purposes including inspection for security and more strengthened monitoring of questionable people. The division was responsible for a wide range of tasks, ranging from judicial and high-level police as managing police data and research and statistics, etc., and expanded by reinforcing identification facilities. The fact that the division was in charge of data management served the cause for the division to be a main liaison for all investigative agencies in Korea.

The active movement of the popul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has caused not only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but also the police to fine-tune the governing policy from managing by

household to by individual. In addition, to solve the problem of an increase in and the accumulation of ideological criminals and criminal cases, which continued in the 1930s, the police reinforced the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second-conviction and the division further reinforced the identification facilities and produced countless card-type records and continued research to enhance efficiency. The division attempted to make criminal method and the appearance of criminals more systemized knowledge as materials to supplement photography and fingerprint. The watchlist cards disclose the methodology of the police who wanted a straightforward identification and easy management of criminals and suspects.

With severe ideological conflicts after the liberation, inspection still was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police and it was reflected to the police system. The police carried on the methodology of the watchlist card and in 1964 enacted a regulation regarding managing the photos and photo tables of suspects. Assessing the regulation, the function of the record was consistent with the cards produced under Japanese rule, which suggests that the cards which had been created after the liberation and which were produced after the regulation are both regarded as a same kind as the one created by Japan.

Watchlist Cards are currently provided for everyone to view one by one but when the characteristic of the record considered more sensitively, it may be utilized more efficiently. For example, if the record is linked to other data which would add person's story, the trait of photography will be utilized with more value and the applicability can also be expanded to other dimensions.

keywords : Watchlist Card in Japanese colonial rule, Watchlist Card, Photographic Record, Police Record, Criminal Affairs Division of the Police Department in Gyeonggi-do

Student Number : 2018-25549